

2020년 Vol. 4 통권 제15호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동향

주요 재정이슈







2020년 Vol. 4 통권 제15호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03
주요	재정동향	07
주요	 재정이스	75



주요 재정지표

- ▼ 총수입・총지출
- ▼ 재정수지
- ▼ 국가채무

총수입 · 총지출

20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3조원 증가한 409.5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7%p 상승한 87.0%

• 총수입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국세수입이 6.7조원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각각 1.5조원, 8.6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0.9조원 증가한 468.5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3.4%p 하락한 84.5%

• 총지출의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지출 및 기금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지출은 34.4조원, 기금 지출은 24.9조원 증가

2019 · 2020회계연도 총수입 · 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20)19			2020	(잠정)	(,	전년동기대비	
7 H					1)					
구 분	추경	결산	1~10월	진도율	추경 ¹⁾	10월	1~10월	진도율	증감	진도율
	(A)		(누계, B)	(C=B/A)	(D)	(당월)	(누계, E)	(F=E/D)	(E-B)	(F-C)
◆ 총수입	476.4	473.1	406.2	85.3	470.7	55.2	409.5	87.0	3.3	1.7
• 국세수입	294.8	293.5	260.4	88.3	279.7	39.1	253.8	90.7	△6.7	2.4
• 세외수입	26.9	25.3	20.2	75.2	29.1	2.1	21.7	74.5	1.5	△0.7
• 기금수입	154.7	154.0	125.5	81.2	161.9	14.0	134.1	82.8	8.6	1.7
(사회보장성 기금) ²⁾	90.9	91.1	75.2	82.7	95.8	8.5	81.4	85.0	6.2	2.3
• 세입세출외	_	0.4	0.0	_	_	0.0	0.0	_	△0.0	_
♦ 총지출	475.4	485.1	417.6	87.8	554.7	33.7	468.5	84.5	50.9	△3.4
• 예산	332.6	329.0	291.0	87.5	377.5	23.0	327.5	86.8	36.4	△0.8
- 일반회계	280.9	277.7	247.0	87.9	323.5	19.7	281.4	87.0	34.4	△1.0
- 특별회계	51.7	51.3	44.0	85.2	54.0	3.3	46.1	85.4	2.1	0.2
• 기금	142.8	144.9	116.0	81.2	177.3	10.7	140.9	79.5	24.9	△1.7
(사회보장성기금)	47.6	48.7	41.1	86.4	61.2	4.9	49.8	81.4	8.7	△5.0
• 세입세출외 ³⁾	_	11.2	10.6	_	_	_	0.1	_	△10.5	_

주: 1)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12월호(2020.12.)

²⁾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³⁾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재정수지

2020년도 10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9.0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47.6조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0.6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45.1조원 증가

-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총수입의 증가(3.3조원)에 비해 총지출의 증가 규모(50.9조원)가 크기 때문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2.5조원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 45.1조원 증가

2019 · 2020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 %p)

	2019				2020(잠정)				전년동기대비	
구 분	추경 (A)	결산	1~10월 (누계, B)	진도율 (C=B/A)	추경 ¹⁾ (D)	10월 (당월)	1~10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총수입(A)	476.4	473.1	406.2	85.9	470.7	55.2	409.5	87.0	3.3	1.7
◆ 총지출(B)	475.4	485.1	417.6	86.1	554.7	33.7	468.5	84.5	50.9	∆3.4
◆ 통합재정수자(C=A-B)	1.0	△12.0	△11.4	_	△84.0	21.5	△59.0	-	△47.6	-
(D)자 등 당정보회사 ◆	43.3	42.4	34.1	_	34.6	3.6	31.6	_	△2.5	_
◆ 관재정수지(E=C-D)	△42.3	△54.4	△45.5	_	△118.6	17.9	△90.6	_	∆45.1	

주: 1)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12월호(2020.12.)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12월호(2020.12.)

국가채무

2020년도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대비 12.6조원 증가한 812.9조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699조원 대비 113.9조원 증가

● 전월대비 채무 증가의 주된 사유는 국민주택채권, 외평채권의 잔액은 1.0조원, 0.3조원 감소하였으나 국고채권 잔액이 13.9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며, 전년대비 증가는 주로 국고채권 증가(110.1조원)에 기인함 ※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루어지나, 국고채 상환은 주로 연중 4회(3·6·9·12월) 이루어지고 있어 상환이 이루어지는 해당 월 외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2019 · 2020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단위: 조원)

	2018	2019			2020(잠정)		증 감		
구 분	결산 (A)	결산 (B)	전년 (B-A)	추경 ¹⁾	9월(D)	10월(D)	전년 (D-B)	전월 (D-C)	
◆ 중앙정부 채무	651.8	699.0	47.2	814.9	800.3	812.9	113.9	12.6	
• 국채 ²⁾	648.4	696.3	47.9	812.1	797.0	809.5	113.3	12.5	
- 국고채권	567.0	611.5	44.5	726.7	707.7	721.6	110.1	13.9	
- 국민주택채권	73.3	76.4	3.2	75.3	79.1	78.1	1.7	△1.0	
- 외평채권(외화)	8.0	8.3	0.3	10.1	10.2	9.8	1.5	△0.3	
• 차입금	3.2	2.6	△0.7	2.8	3.2	3.2	0.6	0.0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1	△0.1	0.1	0.1	0.1	_	_	

주: 1)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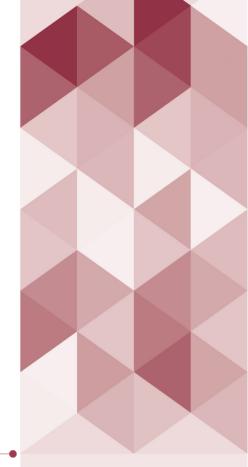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12월호(2020.12.)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12월호(2020.12.)

²⁾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이 포함됨



주요 재정동향

- ▼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 ▼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확정
 -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발표
 - *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발표
 -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발표
 - * 첨단·연구분야 국내유치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발표
 -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 발표
- ▼ 코로나19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 발표
- ▼ 2021년도 4대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 ▼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
-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발표
- ♥ 대체복무제도 시행
-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 ▼ 공공기관의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 ▼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
- ♥ 일본,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 ▼ 2020 미국 대선후보 간 경제·재정정책 공약 비교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경과

● 심의 경과

- **국회 제출**: 9월 3일

- **위원회 심사:** 상임위 10월 29일 ~ 11월 13일 상정, 예결위 11월 4일 상정

- **본회의 부의:** 12월 1일 자동부의

- **본회의 의결:**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경과

국회 제출	위원회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9월 3일	상임위: 10월 29일~11월 13일 상정 예결위: 11월 4일 상정	12월 1일 자동부의	12월 2일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의의

-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도입 후, 7년 연속 예결위 의결 무산

2015~2021년도 예산안 본회의 부의일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부의일	12.1 (정부안 자동부의)	12.1 (정부안 자동부의)	12.1 (정부안 자동부의)	12.2 ¹⁾	12.1 (정부안 자동부의)	12.1 (정부안 자동부의)	12.1 (정부안 자동부의)

주: 1) 2018 예산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를 거쳐 12월 2일로 본회의 부의 일자 연기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다만, 2015년도 예산안 이후 6년만에 법정기한(12월 2일) 내 본회의 의결 완료

최근 10년간 예산안 국회(본회의) 의결일

구 분		2013 예산안								
의결일	1.1.	12.31.	1.1.	12.2.	12.3.	12.3.	12.6.	12.8.	12.10.	12.2.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회 심의결과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 총수입·총지출

- **총수입**은 0.4조원 순감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0.8조원 증가. **총지출**은 2.2조원 순증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45.7조원 증가
 - ※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자출이 순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도(0.7조원) 2010년도(1.0조원) 예산안 이후 11년만임

2021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총수입·총지출 변동

(단위: 조원)

	2020	20	21	그런지가	T-JI - BEUU I
구 분	본예산 (A)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외 등 원 (C-B)	신민내미 (C-A)
총수입	481.8	483.0	482.6	△0.4	0.8
총지출	512.3	555.8	558.0	2.2	45.7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2020.12.2.)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0.4조원 증액 및 0.8조원 감액되어 0.4조원 순감, **총지출**은 8.1조원 증액 및 5.9조원 감액되어 2.2조원 순증

2021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총수입 총지출 변동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수입		충지출			
ТЕ	증액	감액	순증감	증액	감액	순증감	
예산	347,046	△121,209	225,837	6,706,972	△2,564,143	4,142,830	
기금	60,000	△679,186	△619,186	1,377,816	△3,323,472	△1,945,656	
합계	407,046	△800,395	△393,349	8,084,788	△5,887,615	2,197,174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예산안 본회의수정안」(2020.12.2.)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2.6조원 악화된 △75.4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4.9조원 악화
- **관리재정수지**는 △2.8조원 악화된 △112.5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1.0조원 악화
 - ※ 관리재정수지 = 통한재정수지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회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수지
 - ※ 통합재정수지보다 관리재정수지가 △0.2조원 더 악화된 것은 4대 사회보장성기금의 총지출이 2.377억원 순감되어 해당 규모만큼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개선되었기 때문

2021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재정수지 변동

(단위: 조원)

	2020	20	21	コミスプ	그네 크다니니	
구 분	본예산 (A)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익6년 (C-B)	신인내미 (C-A)	
통합재정수지	△30.5	△72.8	△75.4	△2.6	△44.9	
관리재정수지	△71.5	△109.7	△112.5	∆2.8	△41.0	

주: 2021년도 확정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도 예산안 본회의수정안을 바탕으로 추산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2020.12.2.)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가채무

- 국가채무(D1)는 3.5조원 증가한 956.0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50.8조원 증가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0.2%p 증가한 47.3%로 전년 본예산 대비 7.5%p 증가
- ※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합재정수자는 △2.6조원, 관리재정수자는 △2.8조원 악화되었는데 국가채무는 3.5조원로서 더 크게 증가한 이유는 주택도시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 등의 총자출 순감분 전부 또는 일부가 여유자금운용 증가에 활용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자는 개선되나 국가채무 감소로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

2021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국가채무 변동

(단위: 조원, %, %p)

	2020	20	21	ユミス가	저네 크다비니
구 분	본예산 (A)	예산안 (B)	확정예산 (C)	(C−B)	전한테미 (C-A)
국가채무(D1)	805.2	952.5	956.0	3.5	150.8
(GDP 대비)	(39.8)	(47.1)	(47.3)	(0.2)	(7.5)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0.12.2.)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회 심의결과 주요 증감사업

● 주요 증액사업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예비비(3.2조원):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3.0조원, 코로나19 백신확보 0.9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다만, 차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목적 예비비 △0.7조원 감액을 병행하면서 목적예비비는 3.9조원이 아닌 3.2조원만 순증)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6,720억원): 11월 19일 발표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5,000호 확대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6,200억원):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2020년도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분 7,000억원을 일반사업(행안부 재난대책비 6,200억원 및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800억원)으로 이관

• 주요 감액사업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상환(△9,000억원): 일부 과다계상된 국고채 이자 상화 예산 감액 조정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8,000억원): 적정수요 재추산을 통하여 예산 일부 감액
 - ※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수요 확대 등 추가지출 소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방위력개선사업(△2.570억원):** 검독수리-B Batch-Ⅱ(고속정)(△1.096 억원). 핚대공유도탄(△515억원). 경기관총(△316억원) 등 방위력 개선 사업 일부 조정

주요 부대의견(총 47건의 부대의견 채택)

-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
- 일자리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이후 2020년 현재까지 당초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일자리 창출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국회제출시 결과자료를 제출한다.
- 법무부는 검찰청 소관 특수활동비가 수사와 관련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업무경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한다.
-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 편성 주체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집행성과 및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중앙관서 변동

- 2021년도 확정예산 기준 중앙관서는 58개(2020년 55개 대비 3개 증가)
 - 2021년도 예산안 기준 2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증가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1개(질병관리청) 추가 증가
 - 2019년 1개(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가 후 2년 만에 증가

최근 5년간 중앙관서수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앙관서수	54	54	55	55	58

자료: 대한민국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소재·부품·장비신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확정

추진배경

- 정부는 2019년 7월에 시행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¹⁾에 대한 對한국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 안정과 자립화를 목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8)」을 수립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동 대책은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테스트베드 확충 및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등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
- 2020년 7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 동 전략에서는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핵심 전략과제로 ①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 ②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 추진 중
- 정부는 2019~2020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통해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협력생태계 조성, 지원체제 마련 등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발표(2020.7)
 -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성과: 고순도 불화수소(불산액(12N급) 및 불화수소가스(5N급)) 양산 성공, 100대 핵심품목 재고 2~3배 확충, 100대 핵심품목 해외투자유치(EUV레지스트 등)
 - 지원체제 마련: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유영 등

정부,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확정(2020.10.14.)

-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보완하여 구체화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 ② 첨단산업 투자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 ③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을 제시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은 정부의「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토대로 핵심장비·부품 개발 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¹⁾ 수출규제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임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수립 이저까지는 舊)「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수립한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2017~2021년)에 따라 소재 부품 분야 지원정책 추진
 -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100대 신소재·부품 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 · 부품 인프라 구축(실뢰성 센터 등). 소재 · 부품 산업의 고효율 · 친화경 생산체계 구축(스마트팩토리 확산 등), 소재·부품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은 2001년 제정된「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한 것으로 2019년 12월 국회 의결 후 2020년 4월부터 시행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
 - 차세대기술 투자확대: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및 Big3 산업에 대한 R&D투자 확대(2022년 까지 5조원 이상 우선 집중 투자)
 -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및 지원기반확충: 신소재개발 플랫폼 및 설계엔지니어링 플랫폼 구축. 테스트베드 확충. 양산성능평가. 인력지원 등
 - 핵심장비 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해 50개 핵심장비·부품 개발
 - ※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시슬) 핵심품목 중 39개 장비 · 부품 및 전방산업 영향이 큰 11개 장비를 포함. 50개 품목 중 8대 핵심부품은 "제조장비 코어밸류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장기간 집중 지원 계획
 -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 R&D. 지금 등 범부처 기용프로그램 집중 지원(으뜸기업 대상 기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R&D 지원 및 설비투자 지금대출 우선지원, 강소기업 대상 전용 R&D 신설과 모태펀드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 대상 사업고도화자금 지원 및 응 원지자용
 - ※ 으뜸기업은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 기술분야에서 잠재 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 강소기업은 지속적 혁신으로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공급망 디지털화 확대와 안정적 물류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각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연결한 디지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검토 및 첨단물류 인프라 확충 등
- 첨단산업 투자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
 - 세계적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 ※ 규제특례 실증비용 및 고용보조금, 인프라 지원 등
 - 해외기업 핵심기능 수행부서를 국내 대학에 유치, 첨단투자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M&A 지원 등을 통한 지식기능의 On-Shoring 강화
 -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 지급,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 보조금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약 1.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

- 범부처 · 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
 - 관리대상 품목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전세계 338개+α품목으로 확대,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실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주요정책과제 및 내용

주요정책과제	세부과제	주요내용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강국 도약	마까장 선도를 위한 소부장 개발생산 역량 확충	• 차세대 전략기술 투자 확대, 디지털 소재개발 · 엔지니어링 등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기술이 생산까지 연계되는 지원기반 확충, 장비산업 지원 강화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 육성, 소부장 스타트업 100개 육성,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신남방·신북방 등 공급망 다변화
	흔들림없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	• 공급망 디지털화 확대, 안정적 물류 공급망 구축
첨단산업	세계적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첨단 투자지구 도입
투자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첨단 R&D등 지식기능의 on-shoring 강화	• 대학의 첨단 R&D센터 유치거점화, 인력매칭 및 M&A 지원
클러스터화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세제자원 및 보조금 자원, 스마트 리쇼어링 자원, 수요기업의 협력사 유턴자원 장려, 기업수요를 반영한 지원제도 개선
범부처, 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		• 관리대상 품목을 338개+α로 확대하고 밀착 모니터링, GVC 재편대응위원회 신설·운영, 원스탑 대응시스템 가동

자료: 관계부처 합동「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한 발전전망

● 2025년까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 4,834억 달러, 생산 979조원, 무역수지 1,920억 달러 흑자 및 제조업 자급률 76% 달성 전망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한 2025년 발전전망

주요분야	표지요주	현재	2025년
33	수출	3,409억 달러	4,834억 달러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생산	819조원	979조원
07 -	무역수지(흑자)	1,376억 달러	1,920억 달러
GVC를 선도할 기업과 기술력 강화	포브스 2000 중 한국 소부장 기업	11개	20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80.6%	85%
 흔 들 림 없는	제조업 자급률	72.3%	76%
공급망 구축	주요 신산업분야 자급률	46.9%	54.5%

주: 주요 신산업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부문

자료: 관계부처 합동「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발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발표(2020.11.3.)

- 정부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그린뉴딜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그린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구체적인 그린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정책 발표
- '그린유니콘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그린 선도국가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1개 이상 그린유니콘 탄생이라는 목표 및 전(全)주기적 성장 지원,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 3개 추진전략 수립
 - 2025년까지 그린분야 1.1만개사 지원 계획, 신규 일자리 2.5만 여개 창출 기대

그린 스타트업 · 벤처 육성 방안 추진방향

구 분	추진빙향		
비전	그린유니콘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그린 선도국가 대한민국'실현		
	현재(2020년)	\rightarrow	미래(2025년)
_	그린유니콘1) 없음		그린유니콘 탄생
목 표	예비유니콘 없음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2개		아기유니콘 10개
	그린벤처기업 3,551개	l	그린벤처기업 4,500개
추진전략		러스터 중심의	

자료: 환경부 · 중소벤처기업부 「그린 스타트업 · 벤처 육성 방안 (2020.1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

- 전주기적 성장 지원: 창업 → 성장 →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전(全)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 ① (창업단계) 2,000개 그린분야 창업기업 집중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조성과 창업시설 · 공간 · 장비 등 인프라 제공을 통한 창업 저변 확충, ② (성장단계) 유망기업 시장판로 · R&D · 사업화 ·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2.4조원의 그린금융, 2만 명의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통한 성장 기반 강화, ③ (글로벌화단계) 해외 인프라·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기관·대기업과 협력 및 수출지원 등 강화

¹⁾ 그린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그린분야 신생기업을 말하며, 예비유니콘은 시장성·성장성 등이 검증되거나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으로서 유니콘으로 성장가능한 혁신기업, 아기유니콘은 누적 투자유치 실적(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창업기업을 말함

- 주요 재정사업: ①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21년 예산 897억원),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21년 예산 3,111억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21년 예산 303억원), ② **(중기부)** 그린분야 창업사업화 지원('21년 예산 335억원), 그린분야 시장확대형기술개발('21년 예산 138억원) 등

전주기적 성장 지원 전략의 주요 추진과제

구 분	주요 추진과제	주요 내용
	• 그린 스타트업 2000 프로그램 신설	2025년까지 그린분야 창업기업 2,000개사 발굴하여 교육, 사업화, 투자유치 등 지원
창업 저변 확충	•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원 조성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환경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중기부)로 그린기업 전용펀드 조성
	• 그린창업 인프라 제공	그린 메이커스페이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 시설·장비 등 제공
	• 공공수요 기반 시장 창출	그린분야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강화
	• 온·오프라인 시장개척 지원	우수 그린제품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 도입·운용	2022년까지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하여 기술 개발·사업화·해외진출 소요자금 등 지원
스케일업 지원 강화	• 그린금융 2.4조원 지원	2025년까지 그린분야 정책자금 1.9조원, 특별보증 5,000억원 지원
9귂	•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고 등 전문인력 2만 명 양성
	• 미래유망기술 및 적정기술 개발 지원	미래유망기술 및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위한 환경오염방지기술 지원 강화
	•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우수기술, 신기술 등의 사업화·상용화 촉진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2022년까지 100개 구축 지원
	• 상생협력형 해외진출 확대	중소기업 · 공공기관 · 대기업 공동해외진출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밀착 지원	• ODA 등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ODA 프로그램 확대, 다자개발은행 발주 신규사업 수주 활성화
결국 시년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확대, 해외환경통합 정보망을 통한 현지 정보제공 등 강화

자료: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2020.1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 분야별 특화된 집적지역 중심의 생태계 조성

- ①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5대 선도 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 ② 도심역세권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③ 지역별 그린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그린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집적지역 조성
- 주요 재정사업: ① (환경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21년 예산 146억원),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21년 예산 57억원), ② (중기부)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21년 예산 150억원), 그린 규제 자유특구 관련 사업('21년 예산 745억원) 등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 주요 추진과제

구 분	주요 추진과제	주요 내용
녹색 클러스터	•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	5개 지역에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
구축	• 법적 근거 마련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제정
그린스타트업	•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도심역세권을 그린 스타트업 · 벤처 집적지로 리모델링
타운	• 그린 스타트업·벤처 집중유치 및 성장지원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프로그램 마련
규제자유특구	•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 확대	2025년까지 5개 이상의 그린특구 신규 지정
	• 특구 내 혁신기업 육성을 R&D, 투자 강화	그린특구 내 기업 R&D, 사업화 지원 확대

자료: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2020.1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인프라 확충: 그린 관련 규제·제도 개선 및 지원 효율성 제고
 - ① 기업현장 규제·애로 상시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② 녹색경제활동여부 판단을 위한 녹색금융 분류체계 개발 등 녹색금융 활성화, ③ 그린기업 실태조사 실시, 정보제공 및 전문컨설팅 기반 마련을 통한 지원 효율성 제고
 - 주요 재정사업: (환경부)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구축(21년 예산 99억원), 환경산업 통계조사(21년 예산 3억원), 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21년 예산 20억원) 등

인프라 확충 주요 추진과제

구 분	주요 추진과제	주요 내용
그린관련	• 상시 규제 발굴ㆍ해결시스템 구축	옴부즈만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적극 활용
규제 개선	• 기술규제 대응 지원	기술개발 및 규제해결 상담 동시 지원하는 R&D도입
녹색금융	•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녹색금융 분류체계 도출 및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개선	• 환경부문 책임투자(ESG) 제도 개선	기업의 ESG 평가를 위한 표준평가체계 마련
지원 효율성	• 그린기업 통계 보강	그린기업 개념·범위 명확화, 실태조사 실시
제고 및 분위기 확산	• 온·오프라인 그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제공 포털시스템, 지원센터 구축
	• 그린 분위기 확산 노력	그린기업 모범사례 홍보 및 우수기업 포상

자료: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2020.1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발표

추진 근거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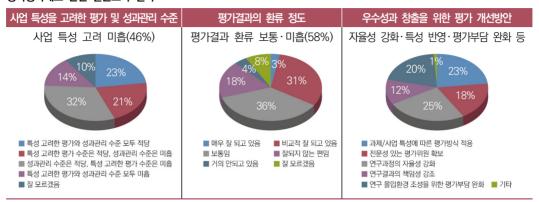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세부적인 성과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에 따라 R&D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해당하며, 그 결과는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
- 그간의 제1차~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통한 평가체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평가부담 개선 요구와 분야별 R&D특성 반영 필요성 증대
 - 또한, 정부R&D 예산이 2019년 20조원을 돌파한 후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투자 효율성 및 성과 제고에 대한 요구 증대로 R&D 평가를 통한 성과 제고 필요성 확대
 - * 정부R&D 예산 : ('17)19.5조원 → ('18)19.7조원 → ('19)20.4조원 → ('20)24.2조원 → ('21)27.4조원

제1차~제3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경과

구분	제1차 (2006~2010년)	제2차 (2011~2015년)	제3차 (2016~2020년)
의의	성과중심 평가제도 근간 마련	평가제도의 고도화 추진	연구자 중심 평가체계 구축
. 71	202 5110 53151	· 논문, 특허 등 단기적·계량적 데이터 평가로 질적 평가 한계	· 관리·효율성 중심의 평가로 도전적·창의적 연구 제약
수립 배경	수립 · R&D 특성을 고려한 배경 성과평가체계 부재	· 일률적 기준에 따른 기관별 상대평가	· 평가등급 도출 위주로 능동적 성과관리 및 사업개선 한계
		· 소수 전문가 참여의 폐쇄적 평가	· 국민 체감 우수성과 부족
		· 사회 파급효과 평가 및 질적	· 혁신도약형 R&D 가점부여
ᄎ지	추진 · 평가체계(자체·상위·특정) 마련 실적 · 표준성과지표 제정	· 사회 피급요파 평가 및 결석 · 성과지표 적용 확대	· 성과목표·지표 사전점검
		· 기관 특성 고려, 절대평가 전환	· 논문의 단순 양적건수 평가 지양
		• 전문가 참여 확대로 개방성 확대	· 종료·추적평가 활성화로 사업의 파급효과 진단

자료: 제1차~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성과평가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정부.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및 2021년 실시계획 발표

- (기본계획) 정부는 2020년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R&D 성과평가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은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을 심의·의결(2020.8.26.)
 - 제4차 기본계획은 ① 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② 정책-투자-평가 연계로 환류 강화, ③ 효과 중심으로 성과평가 고도화, ④ 성과평가의 인프라 확충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구분	제3차	문제점 및 개선요구	제4차
과제평가	평가자료 간소화, 연차평가 폐지, 성실실패 인정 도입 등	연구자 평가부담, 평가의 전문성 등에 대한 개선요구 여전	과정 존중 평가체계 및 연구현장의 부담 완화 지속 확대
사업평가	질적 성과지표 설정 유도 지속,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조정 및 사업 개편 추진	부처의 평가 전문성·자율성 제고 요구 확대, 평가를 통한 성과 제고 노력 미흡	상위평가의 단계적 축소 및 부처 자체평가 중심 운영, 사업 전략계획서 기반의 평가로 부처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기관평가	연구기관의 사회·경제적 기여 평가 강화, 연구사업과 기관운영 평가 분리	기관 평가에 대한 부처·연구회 전문성·자율성 확대 요구	기관평가를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
평가인프라	평가 결과 확정 이후 결과보고서 공개	평가결과 뿐 아니라 평가 과정 등의 공개 요구 증대	사업 전략계획서 및 평가과정·결과 공개, 과제평가 위원 및 결과 공개 등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실시계획)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1년 R&D사업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의결(2020.10.29.)
 - 이번 실시계획은 4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중 2021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제도 신설,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의 전환¹⁾, 평가결과 정보 공개 등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① (사업평가) 사업 기획 강화 및 목표 기반 평가를 위해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의 자체-상위 평가 체계를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
 - 과제별 성과의 합으로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존 방식은 정책·사업의 기획 목표나 효과를 판단하는 데 한계 → 사업의 성과와 효과 중심으로 전략계 획서를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공개하고, 향후 평가기준으로 활용
 - ※ 2021년에는 신규사업과 2022년 중간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우선 적용 할 예정이며, 전략계획서에는 작성지침에 따라 기존 항목인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사업개요, 평가시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
 - 현행 '자체평가(부처)-상위평가(혁신본부)' 체계로 진행되는 중간평가에 대해 2022년부터 상위 평가를 폐지하고, 부처 자체평가 이행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추진 예정
 - 평가등급과 관련, 기존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체제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 체제로 간소화
 -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은 예산 증액, '미흡'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함

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상위평가 폐지 및 모니터링 전환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2021년 법 개정 추진 후 202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2021년은 상위평가 2단계 체제(적절성점검-확인점검)를 1단계 체제(적절성점검)로 축소하여 시행할 계획임

- ② (기관평가) 기관평가의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상위평가를 간소화하고. 평가결과 환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략컨설팅 도입 추진
 - 자체평가의 자율성 확대 및 평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미한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평가항목 제외
 -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점검을 통한 점수 재조정 : 2년 평균 0.4점/100점
 - 자체평가 결과로 도출된 기관의 개선 및 발전방향의 계획 수립과 연계강화를 위한 전략컨설팅 도입 추진(2021년까지 전략컨설팅 방법 구체화 후 2023년부터 본격 적용 예정)
- ③ (과제평가) 미세먼지 저감. 감염병 예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대한 각 부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체감도 제고
 - 2021년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 R&D에 대한 평가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과제평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매년 상반기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대한 각 부처 이행현황을 점검
- ④ (평가인프라 확충)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현재 평가보고서만 공개되고 있는 NTIS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업기획보고서, 전략계획서, 평가 보고서, 성과분석보고서의 사업 전주기 추진과정과 결과를 등록·공개하도록 전환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제7차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계획 」 발표

정부,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0~2022)」 발표(2020.9.15.)

-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시장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을 발표
 - 동 촉진계획은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1)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 산업부·교육부·국토부·과기부·농식품부·농진청·문화부·복지부·방사청·산림청·중기부·특허청· 해수부·행안부·환경부 등 15개 부처·청의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
- 이번 계획은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 시장'의 간극 해소를
 목표로, 지능화 제고(Smart-up)·속도 제고(Speed-up)·규모 제고(Scale-up)의 3대 전략 수립
 - 기술공급자(tech-push) 중심에서 시장수요자(market-driven)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정책의 관점을 전환하기 위한 10대 과제 설정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3대 전략 및 10대 과제

Smart - UP	
1. 시장 중심의 R&D 성과창출	① 시장중심 수요연계 R&D 확대 ②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Speed - UP	
2.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조성	① 사업화 관점의 과감한 기술이전 제도개선 ② AI·빅데이터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③ 기술이전 지원조직 역량 강화
Scale - UP	
3. 사업화 투자 확대	①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메우는 상용화 R&D 확대 ②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다각화
4. 시장진출·판로확대	①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표준·인증애로 해소 ② 공공조달 시장을 기술기반 혁신성장 마중물로 활용 ③ 우수 기술 기반 창업 촉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0.9.)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시장수요자(market-driven) 중심의 기술사업화 촉진계획 주요 과제

- 시장중심의 R&D 성과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연계 및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 (시장중심 수요연계 R&D 확대) 민간 벤처캐피탈(VC) 선투자 후 정부투자 매칭 R&D 도입,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통합형 R&D 및 기업 간 협력 R&D 확대, R&D 특허품질 향상 지원
 - 수요기업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통합형 R&D과제를 신규 과제의 20%이상 추진
 -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해외 수요기관 연계 국제공동 R&D 확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센터를 특화산업 중심으로 재편, 범유럽 공동 R&D 추진 등
 -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공동 R&D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교류 등 컨트롤타워 기능
-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이전 제도개선,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조직 역량 강화
 - (기술이전 제도개선) 공공연구성과 양도 · 전용실시 활성화, 대학 · 공공연 출원 포기 특허 발명자 양도 근거 마련, 기술이전 후 사업화 현황 조사, 중앙-지방 기술이전·사업화 협의회 마련
 -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AI 기술평가 시스템 및 기술평가 활용촉진, 수요자 맞춤형 기술추천 등 데이터 기반의 기술은행(NTB) 개편, 민간의 다양한 R&D성과 데이터제공
 - 실제 기술평가 · 거래된 결과를 기술평가 · 거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유사기술 평가결과에 기반한 AI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구축
 - 민간 R&D 결과물을 기술은행에 등록하여 기술거래 지원하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실제 기술거래 데이터(거래유형, 기술료 수입, 중개수수료 정보) 등을 공개하여 기술거래에 활용
 - (기술이전 지원조직 역량 강화) 기술거래기관 산업별 전문분야 지정,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 (TLO)과 기술지주회사 통합 지원, 지역 특화산업 중심 기술이전 촉진, 기술거래사 관리 강화
- 사업화 투자 확대를 위한 상용화 R&D확대.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다각화 등
 - (상용화 R&D 확대) 각 부처 우수기술의 신제품 개발지원, 소재·부품·장비기술 이전 중소기업 상용 화 지원, 인증·규제·회계·법률 등 컨설팅과 추가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스케일업2)' 지원
 -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다각화) 2022년까지 1.55조원의 사업화 지원펀드 조성, IP 담보대출 확대 및 회수전문기구 조성, 기술창업기업 보증 확대. R&D 사업화 지원 보증사업 추진
 -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대하고, 정부 · 은행이 공동출연하여 은행 손실의 최대 50%까지 보전하는 회수전문기구를 조성
 - 기술평가서를 통해 보증기관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금융기관 자금을 확보

^{2) &#}x27;기술사업화 스케일업 사업'은 2021~2028년까지 총 1,925억원(국비 1,329억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한 후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2단계 R&D를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 사업임

기술사업화 관련 펀드 조성 계획(~2022년)

부처	펀드명	조성규모	주 투자대상
산업부	기술사업화 지원펀드	8,000억원	외부기술도입, M&A 등 기술기반 사업화 추진 기업
중기부·교육부	기술지주회사펀드	6,000억원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1,000억원	초기 대학창업 기업
국토부	국토교통혁신펀드	540억원	4차 산업혁명기술, 주력산업 고도화 등 관련 기술사업화 기업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0.9.)

-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표준·인증 애로 해소 및 판로 확대, 우수기술기반 창업 촉진
 - (규제·표준·인증 애로 해소) R&D샌드박스3) 도입, 신기술 중심 표준화 로드맵 수립, 이종 기술 간 융합 신제품 인증제도 운영, 해외수출시 필요한 인증확보를 위한 해외인증 연계 R&D도입
 - (공공조달시장을 마중물로 판로 확대) 공공수요 기반 수요연계 R&D 확대,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 혁신제품구매목표제 운영, 중견·대기업 NEP⁴⁾ 제품 우선구매 등 혜택 확대
 - (우수기술기반 창업 촉진)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설립 지분·보유기술 범위 등 규제 완화, 공공창업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병원 연구 인프라를 창업기업에게 개방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병철 예산분석관(02-6788-4841)

³⁾ R&D샌드박스: ①사전 신청·협약, ②사업비 집행 세부 규정, ③정산 관련 조항, ④민간 부담금 등에 대한 일괄 규제 면제(또는 완화)

⁴⁾ 신제품인증제도(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을 인증하고 초기 판로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첨단 · 연구분야 국내유치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발표

추진배경

- 정부는 2012년 4월「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발표하였으며. 2013년 8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13.12.) 이후에도, 「수출경쟁력 강화대책」('15.7.),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6.6.)에 유턴투자 활성화 대책이 포함
 -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로, 유턴기업의 중점 유치 방향을 포함
 - 이후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에서 유턴기업 인정범위, 보조금 지급요건 등을 포함한 유턴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19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일부개정 되어 시행중1)
- 최근 코로나19 및 일본 수출규제 지속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면서. 공급안정성 확보와 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내복귀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의 필요성 증대
- 이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 등 최근 발표된 정책에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확대 및 첨단 · 연구분야 국내유치 지원 대책을 포함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 도입. 첨단산업 중심 R&D센터 유치전략 마련 등 발표
 -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9.); 첨단산업 유치·유턴지원에 향후 5년간 약 1.5조원 지원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지원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 등 발표
 - 첨단·연구분야 국내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은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및 요건 완화,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설, 입지·인력 관련 지원 강화 등과 같이 규제가 완화되고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1)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해외진출기업의 범위를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에 한계가 존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19년 12월 10일 일부개정되어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첨단·연구분야에 대한 국내복귀대책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발표 ('20.11.10. 시행)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은, ①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연구개발비 관련 지표 포함, ②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한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인정범위 확대, ③ 보조금 지원대상지역에 수도권 포함(첨단산업 한정) 등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의 첨단산업·연구개발(R&D)센터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R&D센터 등 연구시설 유턴 가능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 가능(시행령 제3조)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 신설 및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차등화(시행규칙 제3조) *경상연구개발비 규모(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0~50억원(25%이상), 50~100억원(20%이상), 100~1,000억원(15%이상), 1,000억원 이상(10%이상)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완화(시행령 제3조 등) *(기존)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 (개정) 소분류가 다르다라도 국내복규가업자원위원회 ⁽¹⁾ 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약하여 동일성 인정 가능 -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 완화
 보조금 확대	-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비수도권(기존)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개정)으로 확대(시행령 제11조) *단, 수도권의 경우 첨단업종(「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제품 등)에 한정하여 수도권에도 보조금 지급

주: 1)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내복귀 지원 강화 -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20.11.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 발표(2020.10.6.)

- 정부는「중소기업기본법」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행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 i은 2017년 1월 「중소기업기본법 i 제19조의2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을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 지원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수립
 - 정책방향은 크게 ①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 ② 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③ 전통 중소기업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로 분류되며, 정책 추진 인프라 측면에서 중소 · 벤처 · 소상공인 정책전달체계 고도화 및 협업체계 강화를 계획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의 비전 및 정책방향

비전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 구현			
<u>†</u>				
전략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 지원체계 구축			
	①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			
정책 방향	② 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③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저채	추지 이끄라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전달체계 고도화 및 협업체계 강화		
67	정책 추진 인프라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전달체계 고도화 및 협업체계 강화			

자료: 대한민국 정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2020.9.)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의 주요내용

- 기존 정책 추진 성과 분석 및 코로나19를 고려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정책 추진여건 분석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 설계(~'20.8.)
 - 중소기업의 생산·수출·고용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은 위기로 분석되나, 벤처기업의 고용 및 기술창업이 증가하는 등 기회 요인도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
- (정책방향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
 -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 · 전통시장의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 ① 소상공인의 생업유지·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재기안전망을 확충하며, ②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정책방향 2)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므로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 필요
 - ① 비대면·디지털·그린 등 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고, ②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며, ③ 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④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권을 육성하고자 함
- (정책방향 3)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 ①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제조공정과 R&D를 혁신하고, ② 소상공인 · 전통시장의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매출을 증대하며, ③ 'Brand K'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④ 「자상한 기업1)」 등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 (정책 추진 인프라)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전달체계 고도화 및 협업체계 강화
 - 정책의 투명성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정책금융 접근성 및 지원대상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며, 주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방안을 강구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¹⁾ 자상한 기업은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자발적 상생 기업'을 의미하며, 선정된 기업은 '상생과 공존'의 실천을 위하여 대기업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공유하는 등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수행하게 됨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의 정책방향 및 정책 추진 인프라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정 책 방	① 소상공인 생업유지 · 경영안정	① 비대면 · 디지털 · 그린 등 유망 벤처 · 스타트업 육성	①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및 R&D혁신
	지원 및 재기 안전망 확충	②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 확충	② 소상공인 · 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
-iċ 0	② 소상공인 영업부담 경감 및	③ AI ·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③ Brand K 등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및 인력 지원 강화
	위기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④ 의탈점· 다틸션 사장· 다틸 생 왕	④「자상한 기업」등 상생협력 확산 및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
7	정책 추진 인프라	중소 · 벤처 · 소상공인 정책전달쳐	세계 고도화 및 협업체계 강화

자료: 대한민국 정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2020.9.)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정책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 전통시장, 벤처 · 스타트업별로 성과목표 선정
 - (중소기업) 5G+AI 스마트공장 300개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와 국가대표 브랜 드K 제품 400개 선정을 통한 수출 촉진(2022년 누적 매출액 0.7조원 달성)을 목표로 함
 - (소상공인·전통시장) 스마트상점 5만개 도입과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온라인 서비스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함
 - (벤처·스타트업)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20개 육성을 통한 K-글로벌 플랫폼 창출과 유니콘 기업 20개 육성을 통한 벤처 4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의 정책대상별 성과목표

정책대상	성과목표
중소기업	• 5G + AI 스마트공장 300개, 국가대표 브랜드K 400개
소상공인 · 전통시장	• 스마트상점 5만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육성
벤처·스타트업	•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20개, 유니콘 기업 20개

자료: 대한민국 정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2020.9.)

코로나19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 발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¹⁾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단년도 사업으로 신규 도입되어 총 2차례 지급
 - 1차 지원금은 총 2조 791억원이 편성(114만명)되었고 2조 1,608억원이 집행(149.6만명)되었으며, 2차 지원금은 5,560억원(70만명)이 편성되어 61만명 지급 완료(12.9. 기준)

1·2차 지원금 예산 및 집행 현황

구분	여	산	인원		
	계획	집행	계획	집행	
1차 지원금	2조 791억원 · (예비비) 1조 3,396억원 · (제3회 추경) 5,700억원 · (이전용등) 1,695억원	2조 1,608억원	총 114만명	총 149.6만명 · (특고·프리랜서) 50.6만명 · (영세 자영업자) 93.7만명 · (무급휴직자) 5.2만명	
2차 지원금	5,560억원 · (제4회 추경) 5,560억원	4,514억원	총 70만명 · (기수혜자) 50만명 · (신규 신청자) 20만명	총 61만명 · (기수혜자) 47.1만명 · (신규 신청자) 13.9만명	

주: 집행액 및 지원인원은 2020.12.9.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1차 지원금)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해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들에 대하여 생계비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 지원
 - (지원 대상) '19.12. ~ '20.1.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가입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소득·소득감소 요건) 소득 하위 70%(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청인 본인 연소득 7천만원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²⁾
 - (지원 내용) 총 150만원3)

¹⁾ 고용노동부는 특고 등이 지원금 신청시 총 21개 직종(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 그 외 7개 직종) 중 1개를 선택하도록 함

[·]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그 외 7개 직종: ① 교육관련종사원(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등), ② 서비스관련종사원(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가사·육아도우미 등), ③ 판매관련종사원(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등), ④ 문화공연관람종사원(연극배우, 예술인 등), ⑤ 운송관련종사원(구난차기사, 공항·항만·시장 관련 하역종사자 등), ⑥ 여가관광관련종사자(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⑦ 기타(심부름기사, 통·번역가, 웨딩플래너 등)

²⁾ 무급휴직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와 소득 요건은 동일하나 소득 감소 대신 무급휴직 일수로 지원 자격을 판단함

1차 지원금 소득요건 및 소득감소요건

구 분		소득·매출 요건	소득감소 요건 또는 무급휴직 일수
특고·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프리랜서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50% 이상 감소
영세 자영업자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원 이하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강소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원 초과~2억원 이하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50% 이상 감소
무급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휴직자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2020.6.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차 지원금)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50~150만원 지원
 - 특고·프리랜서만 지원⁴)하고, 소득요건 및 소득감소요건을 단일 구간⁵)으로 하였으며, 기수혜자의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19.12~'20.1월 노무제공)의 경우 150만원 일시 지원

고용노동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 발표(2020.11.3.)

- 고용노동부는 6.1.~7.20.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수급자 149.6만명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 전체 수급자 149.6만명 중 영세자영업자가 93.7만명(62.6%), 특고·프리랜서가 50.6만명(33.8%), 무급휴직자가 5.2만명(3.5%)이고, 이 중 46%가 소득 하위 20%로 나타남⁶⁾

^{5) 1·2}차 지원금 소득 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 비교

	-, 1 122 - 1 - 2 X - 12 2 I-			
1차 지 원금		2차 지원금		
	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청인 본인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② '20.3~4월 평균소득이 비교대상기간 [※] 의 소득 대비 25~50% 이상 감소	② '20.8월 또는 '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		
		(* '19년 월평균, '20.6월, '20. 7월, '19.8월, '19.9월 소득 중 택1)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2020.6.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³⁾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기지원액을 차감한 차액 지급

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소벤처기업부)으로 지원하고, 무급휴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 긴급복지(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바 2차 지원 대상은 특고·프리랜서로 한정한다는 입장임

⁶⁾ 고용노동부는 각 분위별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사유로서 ①소득 입력값과 실제소득 불일치, ②연소득이 아닌 매출로 지급요건을

- 소득하위 20% 분포에 대하여 근로형태별로는 특고·프리랜서(48.0%)와 영세자영업자(47.1%)가 무급휴직자(3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수급자 소득분위 분포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2020.11.3.)

-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위기 이전⁷⁾과 이후('20년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소득 감소율은 69.1%
 - 연령별로는 40대(71.3%)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소득분위별로는 7분위를 제외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큰 경향

특고·프리랜서 수급자 연령별·근로형태별 소득감소율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2020.11.3.)

-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 소득하위 20%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등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8)

충족하는 경우 등을 제시함

⁷⁾ ① '19년 월평균소득, ② '19.12~'20.1월 중 특정 월, ③ '19.3~4월 중 특정 월과 비교

소득분위 분포: 특고·프리랜서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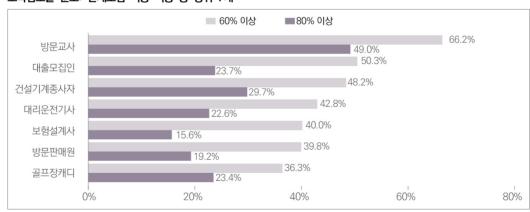
(단위: %)

7 8		1 ~ 2분위		2번이	≬⊟ OI	EĦOI	6범이	7분위
구 분	1	2	소계	3분위	4 분 위	5 분 위	6 분 위	/正刊
보험설계사	7.0	25.3	32.3	22.9	15.4	11.2	7.0	5.4
골프장캐디	12.3	11.9	24.2	18.6	27.6	18.5	6.7	3.3
학습지교사	6.1	23.9	30.0	26.4	20.5	12.6	6.1	2.9
건설기계종사자	8.8	33.9	42.7	18.2	13.8	9.8	6.2	4.8
택배기사	10.4	32.3	42.7	17.7	14.5	10.0	6.7	4.6
퀵서비스기사	16.4	33.2	49.6	25.6	14.6	6.8	1.9	0.9
대출모집인	5.8	23.6	29.4	24.3	16.6	12.0	6.9	5.6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0	18.2	23.2	21.4	16.1	12.2	10.3	7.7
대리운전기사	18.9	37.2	56.1	28.2	10.8	3.0	0.8	0.4
방문판매원	13.6	32.5	46.1	21.8	14.2	8.7	4.4	2.6
방문교사	11.5	39.5	51.0	26.2	13.2	6.0	2.0	0.8
대여제품방문점검원	6.3	17.2	23.5	18.0	28.4	18.7	7.3	3.0
가전제품설치기사	4.5	22.9	27.4	12.7	8.1	19.8	20.3	8.7
화물자동차운전사	9.3	33.5	42.8	20.1	11.6	8.0	4.4	4.7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2020.11.3.)

•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직종은 방문교사(66.2%).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등으로 나타남

소득감소율 분포: 산재보험 적용 직종 중 상위 7개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2020.11.3.)

⁸⁾ 고용노동부는 각 분위별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사유로서 ①소득 입력값과 실제소득 불일치,② 연소득이 아닌 매출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을 제시함

- 특고 수급자 중 지난 3년간('17~'19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0%
 - 고보 가입이력 비율이 높은 직종은 택배기사(31.7%), 서비스관련종사원(31.6%) 등이고, 가입이력 비율이 낮은 직종은 학습지교사(10.8%), 신용카드회원모집인(12.0%) 등임
 - ※ '19.12월~'20.1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특고의 경우 1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이력

(단위: %)

직종	3년간 고용보험 가입률	직종
보험설계사	18.9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16.5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10.8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27.8	방문교사
택배기사	31.7	대여제품방문점검원
퀵서비스기사	31.4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24.7	화물자동차운전사

직종	3년간 고용보험 가입률
신용카드회원모집인	12.0
대리운전기사	21.4
방문판매원	12.7
방문교사	17.7
대여제품방문점검원	20.3
가전제품설치기사	23.2
화물자동차운전사	19.7

직종	3년간 고용보험 가입률
교육관련종사원	20.4
운송관련종사원	26.2
여가관광관련종사원	24.2
판매관련종사원	25.5
문화공연관련종사원	26.0
서비스관련종사원	31.6
기타	25.8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2020.11.3.)

2021년도 4대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정부는 2021년도 예산 중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 활충을 10대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

- (추진배경) 코로나19 등에 따른 분배악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 확충
 - 2020년 3분기 5분위별 소득을 보면 1분위는 1.1% 감소한 반면, 5분위는 2.9% 증가하였으며, 공적이전소득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나타났음!)
- (재정지원 방향)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별 중점 사업을 '4대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로 선정하여 47조 2,277억원 지원
 -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4대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47조 2.277억원)은 정부안(46조 9,660억원) 보다 2,608억원 증액된 규모
 - 주거 분야 2,632억원 증액, 교육 분야는 24억원 감액, 생계 및 의료 분야 정부안 확정
 - ※ 주요 증액사업: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출자 6.720억원 증(국토교통부)
 - ※ 주요 감액사업: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 공유 및 학습진단시스템 구축 24억원 감(교육부)

2021년도 4대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주요내용

(단위: 억원)

분야	주요 내용	2020 예산(A)	2021 예산(B)	증감액(B-A)
생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긴급복지 확대 등	52,390	55,566	3,176
의료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등	172,079	186,991	14,912
주거	•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현실화 등	179,969	212,900	32,931
교육	•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단가인상 등	12,440	16,820	4,380
	합 계	416,878	472,277	55,399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2020.9.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¹⁾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0. 11. 19.)

【생계】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인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으로 전년대비 3,176억원 증가한 5조 5,566억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인 폐지로 인하여 2021년에 15.7만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하여 신규 약 18만 가구(26만명) 지원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한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그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있었으나, 부양비 미인정으로 인하여 기존 수급자 중 4.8만 가구(6.7만명)의 급여 수준이 인상될 예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 기준 중위소득²⁾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 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전환하고 6년간 단계적 이행
- 차상위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확대**(10.4만 가구 → 11.5만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5.8만명)의 자활급여 인상(1.5%) 등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
- 취약계층에 에어컨 등 냉・난방물품 지원(2.3만 가구→3.3만 가구) 및 에너지비우처 지원대상 확대(67.3만 가구 → 70.2만 가구)
 - 에너지 복지관련 사업으로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료 교체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도모

주요 내용 및 2021년 예산

(단위: 억원)

				(11111 712)
구 분	주요 내용	2020 예산(A)	2021 예산(B)	증감액(B-A)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	43,379	46,079	2,700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10.4 → 11.5만 가구) 등 	1,656	1,856	200
자활사업	• 자활급여 인상(+1.5%) 등	5,807	5,959	15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냉방물품 대상 확대(2.3→3.3만 가구) 등	767	869	102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확대(냉방 67.3→70.2만 가구)	781	803	22
	합 계	52,390	55,566	3,176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2020.9.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²⁾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부터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함

【의료】취약계층 건강·의료보장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1조 4.912억원 증가한 18조 6.991억원 규모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151만명)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 의료급여 기본진료비(7조 2.305억원, 7.267억원 증), 건강보험과 연계한 의료보장성 강화 진료비(3,220억원, 506억원 증),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296억원 순증) 등
 -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15억원 순증)

주요 내용 및 2021년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주요 내용	2020 예산(A)	2021 예산(B)	증감액(B-A)
의료급여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단계적 행위별수가 전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70,038	76,805	6,76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급여항목 확대, 국고보조비율 상향 조정(14.0 → 14.3%) 	89,627	95,000	5,37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국고지원)	• 국고보조 법정비율 20% 지원	12,414	15,186	2,772
	합 계	172,079	186,991	14,91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2020.9.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 · 요양보험 국고 지원 확대
 - 보장성 강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 도모
 -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 국고 지원액과 과징금 예상 수입액으로 구성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제1항)
 - 2021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2021년 보험료 예상수입액 66조 4.901억원의 11.4%인 7조 5,703억원을 지원할 계획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단위: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험료 수입(A)	440,476	473,065	500,098	536,415	587,428	639,260	664,901
국고지원금(B)	55,717	52,003	48,737	51,910	59,589	73,351	75,703
지원 비중(B/A)	12.6	11.0	9.7	9.7	10.1	11.5	11.4

주: 1. 지원액은 과징금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2021년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비례하여 증가되었으나, 지원 비중은 0.1%p 감소하였음

^{2. 2019}년 이전 결산 기준, 2020년 이후 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법정 지원 비율인 20%을 준수하여 보험 재정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보험료 수입에 연동된 국고지원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부담금으로 구성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1항)
 -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은 2021년 보험료 예상수입액 7조 5,932억원의 20%인 1조 5,186억원을 지원할 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단위: 억원, %)

							1 1 1 1 1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험료 수입(A)	28,833	30,916	32,772	39,245	49,525	65,338	75,932
 국고지원금(B)	5,166	5,525	5,822	7107	8912	12,414	15,186
지원 비중(B/A)	17.9	17.9	17.8	18.1	18.0	19.0	20.0

주: 1. 발생주의 기준

2. 2019년 이전 결산 기준, 2020년 이후 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주거】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조 2,931억원 증가한 21조 2,900억원 규모

- 청년(4.5→5.0만호), 신혼부부(5.2→6.0만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18.1→19.0만호)
 - 다양한 소득 · 연령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중위소득 150% 이하, 시세 35~90%) 임대 신규 도입(0.5만호, 1,813억원)
- 주거급여의 임치급여 수급자수 확대(106.9 → 118.2만 가구) 및 기준임대료 인상(월 14.1 → 15.5만원)
 - 학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설(3.1만 가구, 월 15.4만원)

주요 내용 및 2021년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주요 내용	2020 예산(A)	2021 예산(B)	증감액(B-A)
공적임대주택	• 2020년(18.1만호) 대비 0.9만호 추가 공급	163,664	193,021	29,357
주거급여지원	• 임치급여 수급자수 확대(106.9 → 118.2만 가구), 기준임대료 인상(월 14.1 → 15.5만원)	16,305	19,879	3,574
- 청년 분리지급	• 신규 3.1만 가구, 월 +15.4만원	-	467	467
	합 계	179,969	212,900	32,93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2020.9.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교육】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장학금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4.380억원 증가한 1조 6,820억원 규모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실시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재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고2·3→2021년 고1·2·3 으로 확대(6,594 → 9,431억원)
- 단가인상(평균 +20%) 및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등 **교육급여 개편**
 - 교육급여를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비대면 학습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자율적·탄력적 대응 지원하고, 연 지원단가('21년 초등 286,000원, 중등 376,000원, 고등 448,000원)를 초등 38.8%, 중등 27.5%, 고등 6.1% 인상
-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확산 지원**
 -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교육콘텐츠 개발·공유 및 학습진단시스템 구축 (신규, 426억원)
 - 저소득 성인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로 개편 추진(34 → 74억원)

● 취약계층 교육안전망 **지원 강화**

- 대학생 근로장학금 수혜자 확대(4.9 → 6.0만명, 3,282 → 3,681억원)
- 희망사다리II 장학금 지원 확대(3 → 5.5천명, 385 → 456억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단가 인상 (400 → 500만원, 1,107 → 1,669억원) 등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업 및 취업 지원 강화
- 다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생활체육 강습 및 찾아가는 발레교실 운영(22→53억원)

주요 내용 및 2021년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주요 내용	2020 예산	2021 예산	증감액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88 → 124만명) 	6,594	9,431	2,837
교육급여	• 통합급여로 전환(용도 자율화)	1,016	1,030	14
원격교육 활성화	•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확대, 장애학생 원격교육 스튜디오 구축 등	34	500	466
근로장학금	• 대학생 교외·교내 근로장학금 수혜자 확대(10.9 → 12만명)	3,282	3,681	399
희망사다리!! 장학금	• 고졸 재직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확대(1.6 →2만건)	385	456	71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직업계고학생이 중소기업 취업시 지원 장려금 단가 인상 (400→500만원)	1,107	1,669	562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체육 강습	• 생활체육 강습 100개소 신규지원(2,000명), 가족동반 캠프 2회 추진	_	10	10
행복나눔 스포츠 강습	• 강습 종목확대(10 → 17개 종목)에 따른 지원 인원 확대(3,000 → 5,100명)	22	33	11
찾아가는 발레교실	• 10개 권역에 10개 교실(9개월 지원)	-	10	10
	합 계	12,440	16,820	4,38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2020.9.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

교육부는 현장 전문가 의견 및 최근 발표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전화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2020.10.5.)

-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디딤돌로 삼아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필요
 -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 협업능력 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 대두
 -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장기화 예상 속에서, 계층 간 이동성 약화 및 사회적 불평등은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기존의 생산성 · 효율성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협력을 통해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구현하는 교육체제 필요
 - 원격수업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 가능성에 대한 기대 증가 및 미래 학교와 교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 제기
- (정책 방향)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기반 구축의 3개 분야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중기(~'23년) 추진 필요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과제는 논의 방향 등 제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분야	추진 목표	10대 정책과제(안)
유·초·중등교육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고등·평생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⑦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⑧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기반 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자료: 교육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2020.10.5.)

- 이번 정책과제는 4차 산업혁명 등과 맞물려 교육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등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정책¹⁾들을 포함하여 향후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임
 - 교육부는 향후 교원,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 교육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10대 정책과제(안)」의 완성도 및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2021년도 업무보고에 반영한다는 계획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예산

- 유·초·중등교육 분야(과제 1~4)
 -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은 「2022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준비, 중등 직업교육 고도화, 온라인 교과서 등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로의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며, 주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21년 1,669억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21년 128억원) 등
 -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은 미래교육 수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및 적정규모 교원수급 등을 내용으로 하며, 제도개선 사항임
 -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은 민주적 학교, 미래형 혁신학교, 안전·건강 등을 내용으로 하며, 주요 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21~'25년 18.5조원) 등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은 교육복지, 국·공립 유치원 개선, 학습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책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며, 주요 사업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21년 신규, 10억원)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주요 내용 및 예산

10대 과제	주요 내용	주요 예산
[유·초·중등교육]		
1.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 (2022 개정 교육과정) 분권, 자율, 다양성, 공공성 강화 • (고교학점제) 학사제도 개선, 공간조성 등 준비 철저 • (중등 직업교육) 실습환경 개선, 사회진출 기회 확대 등 • (교과서) 온라인 교과서 등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	 고교 취압연계 장려금 지원(21년 1,669억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21년 128억원)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추진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 교원수급 추진 학교 변화를 교원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 혁신 	제도개선 사항

¹⁾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8.11.)」,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9.9.)」,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9.23.)」 등 교육현장의 요구가 많고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들을 각 분이별로 우선 발표한 바 있음

	10대 과제	주요 내용	주요 예산
	d이 주인이 되는 형 학교 조성	• 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 • 미래형 혁신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1~'25년간 18.5조원
	성장을 지원하는 안전망 구축	 교육적 배려 필요 학생 지원(교육복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학습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책임 보장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21년신규, 10억원
[고등(대학)	· 평생교육]		
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 지역의 성장 지원		 규제혁신 및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 공유·성장형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1년 1,710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 ('21년 1,500억원)
	I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디지털 가상캠퍼스를 통한 신기술 혁신인재 양성 	• 디자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21년 신규, 832억원)
7. 고등 작	직업 교육의 내실화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 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내실화 	•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21년 456억원)
_	국민의 전 생애 습권 보장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평생학습-직업훈련」, 「일-학습-삶」의 연계 강화 •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1년 74억원)
[기반 구축]			
9. 디지털 전환에	디지털 환경 조성	 (유·초·중등)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고등·평생) K-MOOC 고도화, (가칭)평생배움터 (콘텐츠) 개방형 유통→안전한 활용→질 관리 강화 	•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콘텐츠 개발 및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교육 목적의 효과적 활용	 (학습 지원) 디지털 역량 + 학교의 디지털 혁신 ⇒ 빅데이터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행정 과학화) 빅데이터 및 지능형 통계 기반 교육행정 	활용 활성화 ('21년 259억원)
10. 미래형	국가교육위원회 협력+교육자치 내실화	•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기반 중장기 정책 수립 • (교육자치) 법령 정비를 통해 교육자치 착근 • (교육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미래형 조직 전환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학교-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	• 교육자치협력기구 등 협업 강화 • 교육지원청 현장성 및 독립성 강화	제도개선 사항
	범부처 협업	• 사회부총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주: 동 정책과제는 시안으로, 정책과제의 전체 재정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음 자료: 교육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2020.10.5.)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고등(대학)·평생교육 분야(과제 5~8)

-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은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 대학 생태계 조성, 국립대학을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주요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21년 1,710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21년 1,500억원) 등
- '미래사회 핵심인재 양성'은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주요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 대학('21년 832억원) 등
-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는 대학생 진로 · 취업 지원 확대,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 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내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며, 주요 사업은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21년 456억원) 등
-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평생학습-직업훈련 및 일-학습-삶 연계, 은퇴·노년층 교육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며,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21년 74억원) 등

기반 구축 분야(과제 9~10)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은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환경 조성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 빅데이터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및 교육행정 과학화 등을 내용으로 하며, 주요 사업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21년 259억원) 등
-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협력 및 교육자치 내실화, 학교-지원청-지자체 협력 강화,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며, 제도개선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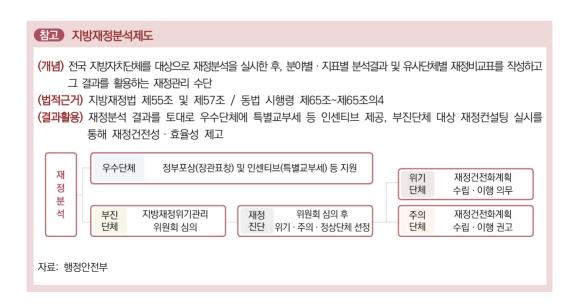
● 교육부 향후 추진계획

- 교원,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 교육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10대 정책과제(안)」의 완성도 및 정책 간 정합성 제고
- 발표한 과제들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2021년도 업무보고에 반영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2020년(FY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발표(2020.11.12.)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자료에 근거한 재정분석 수행
-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초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3개 지표(재정건전성 4개, 재정효율성 6개, 재정계획성 3개)를 기준으로 지표별 가중치 반영 후 1.000점 만점으로 분석·평가
- 2019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리채무 및 부채비율, 지방세징수율 등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었고 재정계획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건전성 분야 중 통합재정수지 감소, 재정효율성 분야의 자체수입비율, 지방보조금증감률 및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등은 다소 부진하여 지속적 개선노력 필요
 - 통합재정수지: '17년 13조원→'18년 9.6조원→'19년 6.0조원
 - 관리채무비율 : '17년 8.06% → '18년 7.35% → '19년 6.54%
 - 자체수입비율 : '17년 26.2% → '18년 25.9% → '19년 24.5%



재정건전성 분야

- 재정건전성 분석 결과,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전년대비 다소 부진하였으나, 채무 및 부채 관련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재정건전성 분야는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평가
 - 재정수지 측면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90%로 지출과 순융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65%p 하락하였으나, 관리채무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은 전년대비 소폭개선(△0.8%p, △0.6%p)

2020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재정건전성 분야)

분0	F/부문/재정분석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지표성격1)
	통합재정수지비율	5.73%	5.52%	5.03%	3.55%	6 1.90%	부진	상향
재정	관리채무비율	10.98%	9.33%	8.06%	7.35%	6.54%	개선	하향
건전성	통합유동부채비율	27.97%	26.10%	23.01%	23.26%	22.66%	개선	하향
	공기업부채비율	65.07%	57.93%	41.58%	37.26%	34.44%	개선	하향

- 주: 1) 상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 1.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산정방식은 {수입-(지출+순융자)} / (지출+순융자) × 100
 - 2. 관리채무비율(%)의 산정방식은 [지방채무잔액(BTL지급잔액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3. 통합유동부채비율(%)의 산정방식은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4. 공기업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자료: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20)

재정효율성 분야

- 재정효율성 분석결과, 전년대비 지방세징수율과 지방보조금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자체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체납액증감률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효율성 분야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관점에서 세입 및 세출관리의 효율을 평가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체수입비율과 증감률 모두 전년대비 여전히 부진하며, 징수관리 측면에서도 전년대비 체납액 감소폭(증감률)이 줄어들어 개선 필요
-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지표의 자체경비비율
 조사결과 전국평균이 10%를 상회함
 - 외부지원관리 효율성 강화 노력에도 전년대비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각각 9.01%p, 10.02%p 높게 나타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신규지표인 자체경비비율 조사결과, 전국평균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필요

2020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재정효율성 분야)

	분야/두	분/재정분석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지표성격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28.65%	26.32%	26.23%	25.90%	24.52%	부진	상향
	세입	자체수입증감률[지방세]	_	5.59%	7.16%	5.43%	7.63%	개선	상향
	관리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	-	4.62%	4.28%	4.09%	부진	상향
		자체수입증감률[세외수입]	_	_	_	△1.20%	8.67%	개선	상향
		지방세징수율	97.22%	97.30%	97.69%	97.80%	97.82%	개선	상향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2	0.9997	1.0027	1.0007	1.0002	부진	상향
	징수 관리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1.99%	1.87%	1.70%	1.51%	1.27%	개선	하향
재정		체납액증감률[지방세]	4.61%	2.45%	△2.41%	△5.44%	<u> </u>	부진	하향
효율성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1.40%	1.23%	1.11%	0.99%	0.88%	개선	하향
		체납액증감률[세외수입]	0.98%	△4.34%	△2.76%	△5.41%	1.27%	부진	하향
		지방보조금비율	7.86%	7.55%	6.31%	6.14%	5.88%	개선	하향
	외부	지방보조금증감률	0.29%	3.71%	△10.62%	3.07%	12.08%	부진	하향
	지원 관리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65%	2.48%	2.52%	2.48%	2.40%	개선	하향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9.34%	0.64%	10.10%	4.28%	14.30%	부진	하향
	내부 경비	자체경비비율 ²⁾	_	_	_	-	10.21%	신규	하향
	경미 관리	자체경비증감률	_	_	_	_	9.07%	신규	하향

주: 1) 상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2) 자체경비비율은 자체세입결산액 대비 자체경비결산액의 비율

자료: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20)

재정계획성 분야

- 재정계획성 분이는 2020년(FY2019) 재정분석 신규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재정운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노력, 재정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평가
- 재정계획성 평가결과,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의 전국평균은 101.96% 수준이며, 세수오차비율은 92.51%, 이 · 불용액 비율은 7.79%으로, 재정계획 역량강회를 위한 체계적 세수관리 노력과 재정집행 측면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등을 통해 이·불용의 발생가능성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 재정계획성 분야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능력향상 및 모니터링 지표로 구성하여 측정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사업비에 대응하는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투자사업 지연 및 계획변경, 투자심사결과 탈락 등에 의해 100%에 미달

2020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재정계획성 분야)

	분야/부	문/재정분석지표	2019년	비고(산정방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 96%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재정	당기세경계복한당미뀰	101.90%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정책사업비)×100				
재정	계획	UI A O 71U10	92 51%	{(지방세 당초예산액/지방세 세입결산액)×50} +				
계획성		세수오차비율	92.51%	{(지방세 최종예산액/지방세 세입결산액)×50}				
	재정	이·불용액비율	7 79%	{이·불용액(사고이월비+불용액)/예산현액}				
	집행	이 물용색미뀰	7.79%	×1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대체복무제도 시행

10월 26일 대체역 첫 소집

- 지난 10월 26일 대체역에 편입된 63명이 처음 소집된 데 이어 11월 23일 43명이 2차로 소집되는 등 총 106명이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함
 -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 11월 말 기준으로 총 1.808명이 대체역에 편입을 신청하여 730명이 편입되었으며, 이 중 63명이 1차로 10월 26일 소집된 데 이어 43명이 2차로 11월 23일 소집되는 등 총 106명이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임
 - 1차로 소집된 63명은 목포교도소(54명)와 대전교도소(9명)에 복무 중이며, 2차로 소집된 43명은 의정부교도소(42명)와 대전교도소(1명)에 복무 중임

대체역 편입 신청건수 및 인용건수

구 분	신청	인용	기각	각하
건수	1,808(695)	730(673)	0	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각급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 '사실조사 및 사전심사' 없이 인용결정이 난 건수임 자료: 병무청

대체역 개요

- 정의: 병역의무자 중「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함
- 복무기관 :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에서 합숙복무 실시
- 복무기간: 36개월
- 복무분야 :「대체역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
- 예비군대체복무 : 복무만료 후 8년차까지 예비군대체복무에 소집되며 40세가 지나면 면제됨
- 보수 등 : 월급,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
 -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대체복무제도 도입 경위

-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음
 -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2018. 6. 28.) 결정을 하였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입법 및 제도 시행을 요구
 - 대법원은 2018년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이에 제20대국회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대체역법")이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12. 27.)에서 각각 의결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시행됨1)

병역의 종류

법률 제16852호 병역법 개정 이전	법률 제16852호 병역법 개정 이후
- 현역	현역
예비역	예비역
보충역 ¹⁾	보충역
병역준비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주: 1)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

-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는 ① 편입신청서 접수, ② 담당조사관 배정, ③ 사실조사 계획 수립, ④ 사실조사 실시,
 ⑤ 사전심사, ⑥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²⁾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연장가능), 신청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1) 「}대체역법」제3조(대체역 편입신청)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시행됨

^{2) 「}대체역법」 제3조 시행일(2020. 6. 30)로부터 1년 이내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24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120일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함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



자료: 병무청

대체복무제도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내역

- 법무부에 따르면 국방부의 대체복무요원 인원 추계 시 2020년부터 매년 540명씩 3년간 1.620명을 합숙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 관련 예산이 편성됨
 - 2020년에는 법무부 소관 2개 세부사업에 285억 9,700만원, 병무청 소관 1개 세부사업에 24억 2.400만원 등 총 310억 2.100만원이 편성됨
 - 2021년에는 법무부 소관 2개 세부사업에 258억 6.900만원, 병무청 소관 1개 세부사업에 28억 9,400만원, 기획재정부 소관 1개 기금사업에 61억 2,100만원 등 총 348억 8,400만원이 편성됨

대체복무제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H-Ind	-lul /u lu	HOR	20	20	2021	 증	감
부처명	회계/기금	시업명	본예산	추경(A)	예산(B)	B-A	(B-A)/A
법무부 일반회계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25,926	25,926	19,786	△6,140	△23.6
	일반회계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1,060,633	1,047,257	1,102,339	55,082	5.3
		대체복무요원 보수	2,671	1,671	6,083	4,412	264.0
병무청	일반회계	대체역 심사	2,424	2,424	2,894	470	19.4
	<u>:</u>	소계	31,021	30,021	28,763	△1,258	△4.1
기획재정부	획재정부 국유재산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관리기금 생활관 신축		0	0	6,121	6,121	순증
	Ē	합계	31,021	30,021	34,884	4,863	16.1

자료: 기획재정부, 법무부, 병무청

- 법무부 소관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은 합숙복무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 대체복무요원 피복비, 급식비, 국내여비 등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영월교육원 신축, 영월교도소 증축, 의정부교도소 등 11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시행 중이며 2021년에는 서울구치소 등 10개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 소관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 사업은 서울남부구치소 생활관 등 9개소 생활관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임

합숙복무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현황

연 도	구 분	기관명	수용인원
	신축	영월교육원(~'21.12)	70명
2020년	신독	영월교도소(~'21.12)	50명
2020년	리모델링	의정부(교), 부산(교), 포항(교), 대구(구), 대전(교), 천안(교), 천안개방(교), 충주(구), 목포(교), 군산(교), 안동(교)	546명
2021년	리모델링	서울(구), 원주(교), 진주(교), 경북2(교), 김천(소), 울산(구), 공주(교), 홍성(교), 전주(교), 순천(교)	484명
2021년~ 2022년	신축	화성(직), 인천(구), 여주(교), 춘천(교), 광주(교), 서울남부(구), 청주(교), 통영(구), 제주(교)	570명

자료: 법무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발표(2020.11.13.)

- 택배산업이 국민의 보편서비스로 성장
 -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택배서비스는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
 - 택배물량은 2014년 16.2억 박스에서 2019년 27.9억 박스로 연평균 11.4%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2014년 4.0조원에서 2019년 6.3조원으로 연평균 9.7% 증가하데 비해. 택배기사는 같은 기간 동안 3.3만명에서 4.9만명으로 연평균 8.2% 증가

택배 물동량 및 매출액 추이

(단위: 만박스, 억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택배기사	33,071	34,248	35,708	38,408	41,376	49,010	8.2
물동량	162,325	181,596	204,666	231,946	254,278	278,980	11.4
매출액	39,756	43,437	47,444	52,145	56,673	63,303	9.7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택배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이 지속되어 종합대책 마련 시급
 - 택배산업은 신속·저렴한 서비스의 제공 및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2020년 택배기사 사망자가 10명에 달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 적정 작업기준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 등 종합대책 마련 시급

택배기사 작업조건 현황 및 문제점

- 장시간 · 고강도 작업조건
 - 지역이나 택배사, 택배기사 및 배송 외 분류·집화 등 업무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택배기사의 1일 평균 작업시간은 12.1시간이며, 1개월 평균 작업량은 6.250건에 달함

택배기사 작업조건

(단위: 시간, 박스)

구분	•	1일 평균 근로시긴		월평균 택배건수				
T 世	집·배송 시간	집·배송 외	합계	집하 박스	뺘 박	합계		
2016	8.2	4.3		1,400	3,828	5,228		
2017 8.2		4.0	12.2	1,639	4,041	5,680		
2018	8.0	4.1	12.1	1,829	4,421	6,250		
상반기	8.0	4.0	12.0	2,062	4,371	6,433		
 하반기	8.1	4.2	12.3	1,600	4,459	6,059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8 화물운송시간 동향」(2020.6.)

- 택배의 평균단가는 2012년 건당 2,506원에서 2019년 2,269원으로 연평균 1.4% 하락하여 배송수수료 저하 요인으로 작용

택배 평균단가

(단위: 원/개,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평균단가	2,506	2,475	2,449	2,392	2,318	2,248	2,229	2,269	△1.4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택배기사의 배송수수료는 건당 800원 정도이며 택배기사의 소득증가는 4.5~4.7%로 물동량 연평균 증가율 10.3%에 비해 낮은 수준

택배기사 월평균 순수입

(단위: 박스, 만원/월)

구 분	2016	2017	2018					
ТЕ	2010	2017	2010	상반기	하반기			
택배건수	5,228	5,680	6,250	6,433	6,059			
(증가율)	_	(8.6)	(10.3)	_	-			
순수입	245	256	268	268	269			
(증가율)	_	(4.5)	(4.7)	_	_			

주: 운임수령 시 미리 차감하거나 처량운행으로 발생하는 지출액의 일부 중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공제금액을 반영한 순수입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8 회물운송시간 동향」(2020.6.)

● 택배기사 제도 및 인프라 현황

- 택배기사의 고용형태는 택배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대리점 또는 택배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률은 18.5%로 추정되며, 고용보험은 현재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아(2021년 7월1일부터 고용 보험 적용 예정)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 택배물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과 자동화 설비 도입이 필요하나 법적·제도적 지위 부족
- 택배사·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상황이며, 대리점의 위약금이나 화주의 백마진1)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팽배

온라인 쇼핑몰 택배요금 지불 구조



자료 : 국토교통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20.11.13.) 상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추진과제

- 작업조건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 감독대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작업조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에 대한 전수조사, 4개 택배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안전보건기준규칙을 개정하여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하고 택배기사 작업조건 실태조사 결과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작업시간에 대한 평가기준 제시
 - 택배기사에게 적정한 물량이 배당될 수 있도록 물량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고,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 금지
 - 택배 부류작업의 책임을 명확화하여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합리적 계약 체결 유도
 - 대리점에「산업안전보건법」상 택배기사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택배기사 맞춤형 건강진단 방안 마련 및 실시 지원
 -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의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
 - 뇌심혈관질화 고위험군 택배기사에 대한 심층진단비용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¹⁾ 백마진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상품이나 서비스의 단가 중 일부를 사전에 할인해주기로 약정하는 것으로서, 택배의 경우 화주와 택배사 간 택배 계약 시 사전에 택배단가를 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함

• 사회안전망 확대2)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위변조 등 법위반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조치 검토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본인 직접 제출, 본인 의사 확인 절차 마련, 산재보험 가입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산재보험 당연적용 원칙을 적용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불가피한 사유로 제외하는 등 「산재보험법」개정 추진
-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실직위험에 대한 안전망 제공 및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추진과제 및 일정

	į	추진과제	일정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현황점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감독	'20.4/4
2. 과로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적정 작업시간·물량 관리, 물량조정 시스템 마련, 심야배송 제한, 주5일 작업 확산, 분류작업 개선, 상자 손잡이, 택배사 책임 강화	'21.
귀한 제도 계신	건강보호 강화	건강진단, 건강진단 사후관리, 고위험군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산업안전보건감독 강화	'21.
3. 사회안전망	산재보험 확대	실태조사 후속 조치, 산재보험 업무절차 개선, 적용제외 사유 축소	'21.
확대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	'21.
	적용	고용보험료 지원	법개정 이후
4 보고자 기체	불공정 관행 개선	백마진 관행 개선, 불공정 관행 금지, 불공정행위 점검	'21.
4.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21.6
7 BE 11C	특별제보기간 운영	특별제보기간 운영	~'20.12.
5. 택배기사	택배가격 구조 개선	가격구조 개선방안 마련	'21.
일자리 질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인프라 확충, 자동화 설비 지원	'21.~
개선기반 마련	법·제도적 근거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20.12.

자료: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2020.11.1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2020}년 12월 9일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당연가입)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장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 화주-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 시장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백마진 관행 및 위약금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 추진
- 택배사-대리점, 대리점-택배기사와 협의하여 적정 작업시간 등 조치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 택배가격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가격구조 개선방안 마련
-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유형 택배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21년~) 및 자동화 설비 도입 시 정책자금 지원('21년~)
- 종사자 보호 강화, 택배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 추진

공공기관의「'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제출

기획재정부는 39개 공공기관의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2020.9.3.)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39개 공공기관의 부채 2020~2024년간 94.2조원 증가 전망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의 2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2020년 39개1))은 향후 5개년 재무전망 및 기관별 경영목 표, 주요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제출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013.12.)' 등의 실행으로 2017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39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8년 이후부터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2020년 521.6조원에서 2024년 615.8조원으로 총 94.2조원 증가 전망
 - ※ 상기 기간 동안의 부채규모 증가 예상액 94.2조원은 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48.1조원), 전력설비 관련 투자비 증가 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24.4조원), 정책모기지 증가로 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5.3조원) 등에서 발생
 - 2020년의 당기순이익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3.0조원의 손실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9년의 0.5조원에서 3.5조원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중장기 재무전망

(단위: 조원, %, %p)

							(
구 분	구 분 2019 2020 (실적) (A) (B) 증간		증감 (B-A)	2021	2022	2023	2024 (C)	증감 (C-B)	
자산	794.6	824.5	29.9	860.4	901.0	934.2	975.1	150.6	
부채	497.2	521.6	24.4	540.8	571.0	591.1	615.8	94.2	
(부채비율)	(167.1)	(172.2)	(5.1)	(169.2)	(173.0)	(172.2)	(171.4)	(∆0.8)	
자본	297.5	302.9	5.4	319.6	330.0	343.2	359.3	56.4	
당기순이익	0.5	∆3.0	∆3.5	5.2	3.4	4.6	6.0	9.0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재정 관련 자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20.9.)

¹⁾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39개 공공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22개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15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정부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대한석탄공사(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됨

- 전년 대비 연도별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 추정액 지속적 상승
 - 2017년도 작성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후부터 추정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가 전년도 추정치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20년 작성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2020년 추정치가 2019년에 작성되었던 2020년 추정치 대비 부채비율은 5.2%p, 부채규모는 10.1조원 증가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의 전년도 추정치 대비 증감

(단위: %p, 조원)

구 분		부채비율						부채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7~2021	△6.0	△1.0	4.0	4.0	5.0	-	-	-	△16.6	△13.9	△6.9	△2.4	4.8	_	-	-
2018~2022		△6.0	△2.0	1.0	4.0	5.0	_	_			△7.9		4.9	10.5		-
2019~2023	-	-	0.0	7.0	7.0	10.0	12.0		_	_	△1.8	7.1		18.3	26.9	-
2020~2024	_	_	-	△2.9	<u>5.2</u>	2.2	5.0	4.2		_	_	△1.7	<u>10.1</u>	1.9		4.8

주: 상기 수치는 각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향후 5년간 추정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의 전년도 추정치 대비 증감 규모임

자료: 각 연도별(2012~2020) 기획재정부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추정 부채비율 및 부채비율 상승 원인을 검토하고,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2020년에는 부채총계가 자본총계를 초과하여 자본잠식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에서 2020년 부채규모 추정치가 2019년에 추정한 것 보다 각각 4.4조원, 1.6조원, 0.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정부 배당 수익 감소 전망
 -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강원 랜드의 경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에 따라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됨
 - 상기 주요 기관의 2020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2,376억원~1조 2,942억원이 감소한 △1.367억원~△4.307억원 수준임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2020년 당기순손실 발생 주요 공공기관

(단위: 억원)

	실적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0)					
기관명	2018	2019 (a)	2020 (b)	증감 (b-a)	2020년 당기순손실 발생 주요 원인				
인천국제 공항공사	11,209	8,634	△4,307	△12,942	 항공기 운항 및 공항이용객 감소 2020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항공기 운항 편수 23.5%, 공항 이용객 수 3.0% 수준 2020년 1~6월 면세점 등 상업시설 사용료 등 감면 2,780억원 				
한국 공항공사	1,259	1,009	△1,367	△2,376	 항공기 운항 및 공항이용객 감소 2020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항공기 운항 편수 68.2%, 공항 이용객 수 58.4% 수준 2020년 1~6월 면세점 등 상업시설 사용료 등 감면 295억원 				
한국 마사회	1,828	1,449	∆3,448	△4,897	• 경마 중단 조치 등에 따라 2020년 상반기의 2019년 상반기 대비 입장 인원 비율이 24.6% 수준임				
강원랜드	2,972	3,347	△3,040	△6,387	카지노 휴장 조치 등에 따라 2020년 상반기의 2019년 상반기 대비 입장 인원 비율이 30.9% 수준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상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는 2016~2020년간 지속적인 당기 순이익 발생으로 정부에 연간 5,813억원에서 6,034억원 수준의 배당 및 기금 전입금 등을 지속 적으로 납부
- 상기 기관들은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정부에 배당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기순손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부 수입 예산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 공공기관의 배당 등 정부 수입 납부액(2016~2020년)

(단위: 억원)

기관명	수입 주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시설특별회계 - 공항계정	2,706	3,473	4,725	3,755	3,994	4.599
한국공항공사	교통시설특별회계 - 공항계정	317	319	328	166	195	4,599
인독등양등자	일반회계	339	341	351	178	209	0
한국마사회	축산발전기금	1,691	1,565	1,655	1,264	938	703
강원랜드	한국광해관리공단	760	768	768	698	698	0
	합계	5,813	6,467	7,827	6,062	6,034	5,302

주: 상기 연도는 정부 수입연도 기준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예상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석 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마 사회 등의 기관은 2020~2024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총 당기순 손익 합계가 손실로 예상되고 있음
 - 이들 기관의 지속적인 손실 발생은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방안 및 시행을 검토할 필요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당기순손익 합계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단위: 억원)

							1 1 1 1 1	
	2010	2019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관명	2019 (결산)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4 합계	
국민건강보험공단	△36,266	△30,370	△6,660	△12,358	△10,185	6,803	△52,770	
한국석유공사	∆1,548	△15,232	△11,990	△15,843	△2,004	∆818	△45,887	
한국철도공사	△469	△9,094	∆3,325	1,693	∆819	△80	△11,625	
한국광물자원공사	△5,638	△10,612	6,433	△1,883	△1,669	△1,718	∆9,449	
대한석탄공사	△1,221	△1,264	∆1,146	△1,152	△1,264	△1,303	∆6,129	
한국전력공사	△25,950	8,998	17,464	677	△12,320	△20,741	∆ 5,922	
한국서부발전	∆466	∆1,615	△1,293	288	294	153	∆2,173	
한국마사회	1,449	∆3,448	190	105	∆116	∆306	∆3,575	

주: 상기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한국전력공사는 별도 재무제표, 나머지 기관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별 2019년 결산자료 및 기획재정부, 「2020~2024년 재정 관련 자료,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20.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

세계 주요국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조합으로 재정준칙을 운용 중

-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재정운용 목표
 - 수입준칙은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입법 시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다른 의무지출 감소나 세입 증가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준칙
 - 지출준칙은 총지출한도, 분야별 명목·실질지출한도, 명목·실질지출증가율 한도를 설정하는 준칙
 - 재정수지준칙은 매 회계연도마다 또는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이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준칙
 - 채무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준칙

재정준칙 유형별 장단점 및 운용국가

재정준칙	장점	단점	대표적 운용 국가
수입준칙	• 초과수입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에 기여함	• 수입준칙 단독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함	네덜란드
지출준칙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함 단순하고 감독이 용이하여 통제가능성이 높은 편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함 재정건전화 시기에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조세지출 등을 통한 우회위험이 존재함 	스웨덴, 미국, 폴란드, 네덜란드
재정수지 준칙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고,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대중들과 소통이 쉬움	 경기안정화기능이 미약(경기순응적)함 거시경제 안정성이 저해될 기능성이 존재함 수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상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채무준칙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임 단순하고 감독이 용이하여 통제가능성이 높은 편임	 경기안정화기능이 미약(경기순응적)함 최적의 부채수준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어려움 	독일, 영국, 스페인, 체코

자료: 김정미·이강구,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2013.9.)

- IMF(2016)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일 재정준칙은 재정수지준칙으로 78개국이 운용 중이며, 채무준칙은 75개국, 지출준칙은 45개국, 수입준칙은 14개국이 운용 중
-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함께 사용하는 국가는 65개국, 지출준칙과 재정수지준칙을 함께 사용하는 국가는 40개국, 지출준칙과 채무준칙을 함께 사용하는 국가는 38개국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은 각 국가별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EU 차원에서의 재정준칙도 운용하고 있음

국가별 운용 중인 재정준칙

국가명	지출준칙	수입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	국가명	지출준칙	수입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
호주	√	√	√	√	라트비아	√	-	√	V
오스트리아	√	-	√	√	리투아니아	√	√	√	V
벨기에	√	-	√	V	룩셈부르크	√	-	√	V
칠레	-	-	√	-	멕시코	√	-	√	-
콜롬비아	V	-	√	-	네덜란드	√	√	√	V
체코	V	-	√	√	뉴질랜드	-	-	√	V
덴마크	√	-	√	√	노르웨이	-	-	√	-
에스토니아	V	-	√	√	폴란드	√	-	√	V
핀란드	V	-	√	V	포르투갈	√	-	√	V
프랑스	√	√	√	√	슬로바키아	√	-	√	V
독일	V	-	√	√	슬로베니아	√	-	√	V
그리스	V	-	√	√	스페인	√	-	√	V
헝가리	V	-	√	√	스웨덴	√	-	√	V
아일랜드	√	-	√	√	스위스	-	-	√	-
이스라엘	V	-	√	-	영국	√	-	√	V
이탈리아	√	-	√	√	미국	√	-	-	-
일본	-	-	√	-					

자료: IMF, 「Fiscal Rules Dataset 1985-2015」(2016)

미국은 PAYGO 제도 및 강제삭감. 정부부채 상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PAYGO(pay-as-you-go) 제도는 수입준칙 및 지출준칙의 일환으로 의무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의무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재정준칙
 - PAYGO제도는 「1990년 예산집행법 (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에 의해 처음 도입 되었으며, 2009년에 재정적자가 GDP대비 11%에 이르러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2010년 PAYGO법」(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을 제정함으로써 PAYGO제도를 재도입함

- 「2010년 PAYGO법」의 주요 내용은 지출의 수입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상쇄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0년 PAYGO법」에 따라 분류된 법안들이 재정 적자 증가의 영향을 가져올 때 의무지출에 한해 강제삭감(Sequester 또는 Sequestration; 정부 예산을 일부만 제외하고 일정 비율대로 삭감하는 조치)을 통해 재정적자 증가분을 상쇄함
- 정부부채 상한 제도는 채무준칙의 일환으로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따라 채무한도를 통제하는 제도이나, 현재는 2021년 7월 31일까지 부채 한도가 유예된 상황(공공법(Public Law) 116-37(2019.8.2.))

최근 정부부채 한도 상향 추이

(단위: 십억달러)

일자	공공법(Public Law) 번호	새로운 부채 한도	증기분
2015. 3.16.	P.L. 113-83	18,113	901
2017. 3.16.	P.L. 114-74	19,809	1,696
2017. 9. 8.	P.L. 115-56	20,456	647
2018. 2. 9.	P.L. 115-123	21,988	1,532
2019. 8. 2.	P.L. 116-37	2021.7.31.까지 부채 한도 유예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Debt Limit Since 2011」, CRS Report R43389(2019.8.)

영국은 「2011년 예산책임 및 감사법」에서 공공부문 채무(GDP 대비) 감소와 재정수지 교형을 규정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도입

- 2019년 영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0~2021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예산책임헌장에 명시된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되었으며, 2020년 2월 기준 영국의 예산책임헌장에 명시된 재정준칙은 재정수지준칙의 일환인 차입준칙과 채무준칙으로 구분됨
 - ① 차입준칙(the borrowing rule): 2020~2021회계연도 경기조정재정수지 공공부문 적자를 GDP의 2% 미만으로 유지
 - ② 채무준칙(the debt rule): 2020~2021회계연도 공공부분 채무 GDP 대비 비율 축소

독일은 2009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채무준칙의 일환인 채무제한제도(Schuldenbremse)를 도입

• 헌법(GG) 제109조 제3항('차입 없는 재정균형의 원칙')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

- 주정부는 2020년부터 재정수지를 GDP 대비 0%로 달성해야 하며, 경기변동을 고려한 공공재정 계회을 수립
- 다만, 자연재해 또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국가의 재정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가능(헌법 제109조 제3항 제3문)

프랑스는 자국 재정준칙으로 EU의 신재정협약(2012년)에서 체결한 재정수지준칙을 2012년 12월 「재정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에 반영

● 재정수지준칙은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 대비 0.5% 이내로 제한

스웨덴은 2019년 재정수지 흑자목표를 GDP의 $\frac{1}{2}$ %로 유지하고, 총 정부 부채는 GDP의 35% 이내로 유지하는 새로운 재정수지 준칙을 도입

- 스웨덴은「예산법」제2장 제1조 및 제9장 제2조에 정부가 의회에 재정수지 목표를 제시하고. 연 2회 재정수지 목표의 달성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2000년을 제외하고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스웨덴 정부는 2007년에 GDP 대비 2%에서 1%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고, 2016년부터 예산흑자 목표를 GDP의 $\frac{1}{2}$ %로 추가 조정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가입국이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른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으로 EU 통화통합과정에서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제안, EU 회원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이를 각 회원국의 자국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주요국은 통상 마스트리히트 조약보다 더 강하게 재정준칙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일은 연방정부 기준으로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를 0.3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를 통해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 대비 0.5%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명확한 달성경로를 제시해야 할 것을 규정함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현황

국가	재정운용목표	법적 기반	주요 내용			
미국	PAYGO	법률(2010)	의무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 입법시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다른 의무지출 감소나 세입 증가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 되도록 의무화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채무한도 법률(2011)		법률에 의해 채무한도를 매년 통제(Budget Control Act of 2011)			
영국	채무비율 재정수지	법률(2011)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 전년보다 감축 2020~2021회계연도 경기조정 재정수지 GDP 2% 미만 유지			
독일	채무비율	헌법(2016)	구조적 재정적자(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부채의 신규발행을 GDP 대비 0.35% 이하로 허용함			
프랑스	재정수지	법률(2012)	구조적 재정적자(GDP 대비) 0.5% 이하 유지			
스웨덴	재정수지	법률 (2000, 2016)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GDP 대비) 2% (2000) → 0.33% (2016) 이상 유지			
EU	채무비율 마스트리히트 재정수지 조약(1992)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 이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2020.6.)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 우리나라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구분	주요 내 용
준칙성	① 국가채무 GDP 대비 60% ②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③ 한도 초과시 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
보완성	① 위기시 적용 면제 및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 ② 경기둔화 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
실효성	①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 ②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 ③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2020.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일본,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일본 정부는 106.6조엔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각의 결정(2020.12.21.)¹⁾

- 이는 2020년도 본예산 102.7조엔 대비 4.0조엔(3.8%) 증가된 규모이고, 추가경정예산(160.3조엔) 대비 53.7조엔(33.5%) 감소된 규모임
 - 일본은 2020년도에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회에 걸쳐 총 57.6조엔의 추가경정예산2)을 편성하였음
- 일본은 2020년 7월에 발표된 예산안 편성방침에서 ① 기본적으로 전년과 동일규모 편성, ② 코로나19 대응 등과 관련하여 추가 편성 가능, ③ 기존 세출개혁 정책 유지, ④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에 대한 검토 강화 등의 기본방침을 밝힌 바 있음

2021년도 일본의 예산안 현황

(단위: 억엔, %)

그브	2020본예산	2020추경	2021예산안	증	감
ТЕ	(A)		(B)	(B-A)	(B-A)/A
예산액	1,026,580	1,602,607	1,066,097	39,517	3.8

주: 1. 일반회계 통상분에 임시특별조치분을 합한 것임

2. 2020년도 추경 예산액은 2차 추경 기준임

자료: 일본 재무성

일본의 예산과정

시기	주요 일정
4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7월	예산안 편성방침 시달
9~10월	각 부처는 다음연도 예산요구안을 재무성에 제출
12월말	재무성은 각 부처 예산요구안을 검토하여 정부 예산안 확정
다음연도 1월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다음연도 3월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 확정

²⁾ 일본의 추가경정예산은 보정예산(補正豫算)의 명칭으로 시했되고 있으며, 2020년도의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5.4조엔 규모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¹⁾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이며, 일본의 예산과정은 ① 회계연도 시작(4월), ② 예산안 편성방침 시달(7월). ③ 예산요구안 제출(각 부처→재무성. 9~10월). ④ 재무성 검토후 정부예산안 확정(12월말). ⑤ 정부예산안 국회제출(다음연도 1월), ⑥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 확정(다음연도 3월)의 순으로 이루어짐

의료·복지 등 사회보장정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의 예산안 규모가 33조엔으로 가장 큼

- 2021년도 예산안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후생노동성(33.1조엔), 총무성(16.6조엔)의 순으로 큼
 -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방지 의료 · 복지 서비스 제공 부문(1조 6,442억엔), 고용 유지 · 지속 등 지원 부문(1조 4,735억엔), 생활곤란자 등 자립지원 부문(4,344억엔) 등을 중심으로 편성
 - ※ 일본의 의료·고용·복지 등 사회보장 관련 예산(비중)은 2010년 27.3조엔(29.6%)에서 2021년(안) 35.8조엔(33.6%)로 증가 추세
 - 총무성은 마이넘버카드 보급·활용 촉진 부문(1,326억엔), Beyond 5G 등 첨단기술 전략적 투자 부문(625억엔), 디지털 거버먼트 추진 부문(105억엔) 등을 중심으로 편성
 - ※ 마이넘버카드: 국민들이 금융 및 행정업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급하는 일종의 증명서
- 국채발행 증가에 따라 국채비는 2020년 23.4조엔(본예산)에서 2021년(안) 23.8조엔으로 0.4조엔(1.7%)
 증가
 - 국채발행 잔액은 2019년말 887조엔에서 2020년도(예상) 985조엔으로 98조엔(11.0%) 증가 ※ 국채비: 국채 및 이자 비용 상화을 위한 비용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5.0조엔이 신규로 별도 편성(일반 예비비 제외)

2021년도 부처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엔, %)

					(E11: 4E; 70)
구 분	2020본예산	2020추경	2021예산안		증감
ТЕ	(A)		(B)	(B-A)	(B-A)/A
예산액 합계	1,026,580	1,602,607	1,066,097	39,517	3.8
- 후생노동성	330,366	376,142	331,380	1,014	0.3
- 총무성	167,692	297,348	165,952	△1,740	△1.0
- 국토교통성	68,983	69,584	60,578	△8,405	△12.2
- 문부과학성	54,152	58,532	52,980	△1,172	△2.2
- 방위성	53,133	53,317	53,235	102	0.2
- 농림수산성	22,170	25,224	21,234	△936	△4.2
- 재무성	18,064	201,116	17,660	△404	∆2.2
- 경제산업성	12,435	180,139	9,170	△3,265	△26.3
- 법무성	8,206	8,280	7,431	△775	∆9.4
- 외무성	7,120	8,169	6,959	△161	∆2.3
- 환경성	3,537	3,654	3,233	△304	∆8.6
- 기타부처	47,207	80,931	48,696	1,489	3.2
- 코로나19 예비비	_	_	50,000	50,000	순증
- 국채비	233,515	240,169	237,588	4,073	1.7

주: 1. 일반회계 통상분에 임시특별조치분을 합한 것임

자료: 일본 재무성

^{2.} 기타 부처는 국회, 재판소, 회계검사원, 내각관방 등을 포함한 것임

^{3.} 재무성의 경우, 국채비를 제외한 것임

세입재원 중 공채의존도는 증가 추세

-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2015.6.)」 및 「신 경제·재정재생계획(2018.6)」 등을 발표하면서 세출개혁 대책을 지속하고 세입재원 중 공채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이었음
 -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PB) 흑자를 목표로 하여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고령화에 따른 증가 수준으로 제한하고, 비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세출개혁을 지속
 - ※ 공채의존도: 세입재원 중 국채발행(공채금)의 비중
 -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사회보장, 공공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정책적경비)를 세수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
- 공채의존도는 2009년 51.5%에서 2017년 34.2%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40.9%로 증가
 -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시적으로 64.1%로 증가

공채발행액 및 공채의존도 추이



주: 2019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0년은 추가경정예산, 2020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임 자료: 일본 재무성

2020 미국 대통령선거 경제 · 재정정책 공약 비교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은 자국의 "경제재건"¹⁾을 향한 주요의제를 설정

도널드 트럼프 "America First" 對 조 바이든 "Buy American"

-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조 바이든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통한 미국의 발전적 재건이라는 (Build Back Better)구호를 내세우며 국내 제조업·산업, 환경·기반시설, 무역·통상, 기술 등 각부문에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우선시하겠다고 발표함. 경제계획 구호 상의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나 세부적인 공약에서는 차이가 있어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공약 실현에 따른 주요 정책방향이 결정될 예정
- 조세·세금, 최저임금, 투자영역 등에서 두 후보 간 경제·재정정책 공약 내용상의 차이 발생
 - 두 후보²⁾ 모두 미국의 "중산층 복원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를 위한 실천 계획(Plan)에는 차이가 발생
 - 특히, 경제·재정정책 중에서 조세·세금과 최저임금 부분에서 두 후보 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남
- 도널드 트럼프는 부자감세, 상속세 폐지, 부유세 반대 및 현재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7.25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조 바이든은 부자증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
 - (보건·복지) 두 후보 모두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는 주정부별로 다른 보험체계를, 조 바이든은 처방약의 높은 가격을 과다한 의료비 지출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각각 제시
 - (기업·금융) 도널드 트럼프는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조 바이든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위치한 월가를 전체적으로 규제할 것임을 제시
 - (산업·제조업) 미국산 물품의 생산, 공급, 소비 의무를 강조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에서 두 후보 간 공약상 유사성이 큼

¹⁾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재개(restart)", 조 바이든은 "경제재건(recovery)"이라고 각각 표현한 것을 재건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

^{2) 2020} 미국대선은 선거인단 투표(2020.12.14), 상원의장 대선결과 공표(2021.1.6), 정식 취임식(2021.1.20)이 남은 상황이므로 "후보"라고 지칭하였으며, 후보 간 주요 공약의 일부내용만 제시하였음

주요 공약: 경제·재정 주요 이슈 관련

도널드 트럼프 "America First"	영역 구분	조 바는 "Buy American"
미국 우선주의 "Making America Great Again" 보호무역 정책, 관세장벽	정책방향	미국의 발전적 재건 "Build Back Better"
부유층과 대기업 친화 정책, 세제간소화, 부자감세, 상속세폐지, 중산층 복원 을 위한 부유세 반대 및 중산층 가정 중 82%에 대해 세금 감면, 법인세 최고세율 (21.0%) 유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37.0%) 유지	조세·세금	중산층 회복, 부자증세, 40만 달러 초과소득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0% → 39.6%),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21.0% → 28.0%)
연방기준 7.25달러(\$) 유지	최저임금	2배 이상 인상 추진: 7.25달러(\$) → 15달러(\$) , 중산층 복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오바마케어(Obama Care)" 폐지, 경쟁을 통한 의료보험 인하 유도, 의료보험 단일시장 구성	보건·복지 (헬스케어)	"오바마케어(Obama Care)" 강화,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하여 제약회사에 유리한 예외조항 폐지
의약품·의료장비 미국산 제품 사용 의무 강화 , 미국 공공 조달시장 내 해외기업 참여 제한	산업·제조업	국방·의약품 등 미국산 물품 생산과 구매 보장 , 제조 및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주도의 공급망 구축
기업 친화적 정책기조 지속, 대형은행 규제 완화	기업, 금융	Tech-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개혁, 은행 자본요건 강화 등 월가(주요 금융기관) 규제
1조 8,000억 달러 규모 지원안 고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미국 내 생산 강조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	코로나19 진료, 백신 치료비 100% 보장 의료보험 관련 법안 마련, 오바마케어를 개선하여 중산층에게 혜택 확대, 2조 2,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고려
전통적인 기반시설(항공, 도로 등) 중심으로 1조 달러 규모 투자	인프라·투자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4,000억 달러 추가 투입, 친환경(기후변화) 인프라에 2조 달러 규모 투자

주: 1. 두 후보의 대선캠프·인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약은 한국·미국의 보도자료 등을 확인하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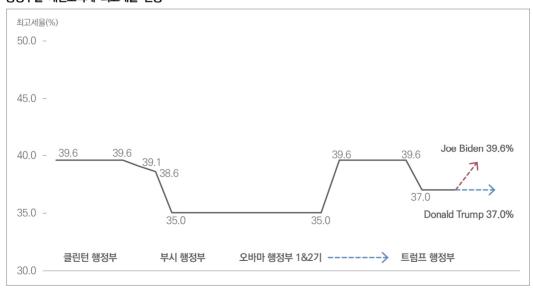
검색일: 2020.12.10.

^{2.} 구체적인 경기부양책, 인프라·투자 규모는 대선캠프·인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어렵고,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시기별로 변동이 있었으므로 대선 직전 보도된 기사를 확인하여 작성함. 따라서 2021년 1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확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조 바이든 인수위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 캠프 홈페이지(donaldjtrump.com),

[조세] 도널드 트럼프는 기존 개인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유지, 조 바이든은 개인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상향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

- 개인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소득자에 대한 공제, 자본소득세 등에 대한 두 후보 간 입장 차이 발생
 -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0%에서 21.0%까지 낮췄던 기존 입장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0%를 유지하는 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 급여세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혜택을 영구적으로 적용, 자본소득세를 기존 23.8%에서 15.0~20.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
 - 한편, 조 바이든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0%에서 28.0%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7.0%에서 39.6%까지 인상, 40만 달러 초과 소득자에 대해 각종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세 12.4%를 부과, 100만 달러 초과 소득자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인상하는 등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
- 그동안 미국은 행정부별로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계속 변경해 옴
 - 클린턴 행정부(1993~2000년)까지 39.6%를 유지하였고, 부시 행정부(2001~2008년)는 이전 행정부의 최고세율인 39.6%를 2001년 39.1%, 2002년 38.6%, 2003년에 35.0%까지 하향 조정, 오바마 행정부는 1기(2009~2012년)까지 35.0%를 유지하다가 2기(2013~2016년) 행정부에서 39.6%까지 인상하였으며,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37.0%까지 낮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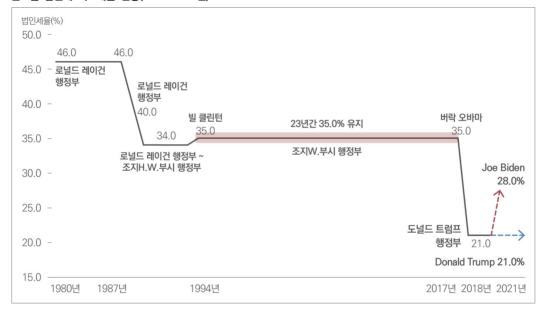
행정부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변동



자료: www.irs.gov(IRS: Internal Revenue Service), 검색일: 2020.12.10.

- 또한, 연도별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변경해 옴
 - 40년간(1980~2020년) 연도별 법인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1980년 46.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2기에 40.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말부터 조지 H.W.부시 행정부까지는 34.0%까지 낮춰 적용
 -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1993년)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2017년 1월)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말까지 약 23년간 35.0%를 유지하였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0%에서 21.0%까지 낮춘 상태

연도별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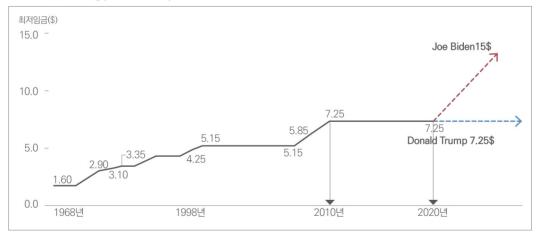


자료: www.taxpolicycenter.org, 검색일: 2020.12.10.

[최저임금] 도널드 트럼프는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유지하고, 조 바이든은 2026년까지 2배 이상에 달하는 15달러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

- 미국 최저임금은 2009년 6.55달러에서 2010년 7.25달러로 인상된 이후 10년간 지속
 - 7.25달러는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 2020년 기준 21개 주정부가 7.25달러 내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한 반면에 나머지 29개의 주정부와 컬럼비아 특별자치구에서는 최대 15달러까지인상하여 지급하기도 합3)
 - 196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60달러였으며, 1998년 5.15달러로 인상된 이후에 2007년까지 약 9년 동안 유지되다가 2010년에 7.25달러로 인상되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2019년 민주당 소속 보비 스콧 (Bobby Scott, 하원/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연방정부가 10년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Raise the Wage Act(임금인상법)」을 발의한 상태
 - 최저임금은 미국 대선 이전부터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고, 2020년 11월 초 플로리다 주가 50개주 중 8번째로⁴⁾ 2026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승인한 상황이며, 나머지 주정부·기업의 최저임금 조정은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1968~2020년)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www.dol.gov), 검색일: 2020.12.10.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박지성 예산분석관(02-6788-4646)

³⁾ www.pavcor.com/resource-center/minimum-wage-by-state, 검색일: 2020.12.10.

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코네티컷, 일리노이즈,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등 총 8개 주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승인하였음. "Florida Votes to Raise minimum wages to \$15 an hour", www.washingtonpost.com, 2020.11.4.



주요 재정이슈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발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발표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발표(2020.10.30.)

- (추진배경) 사회시스템과 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미래차 확산·시장선점 가속화 필요
 - 세계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 중으로,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미래차 발전전략」(19.10)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및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달성 목표 제시
 - 친환경차 보급실적 확대 및 수출량 증가, 이차전지 점유율 세계 1위('20.1~8월),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마련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① 친환경차 보급목표 대비 수요 부족, ② 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 ③관련 업계의 불안정한 산업기반 등에 대한 대응 필요
- (추진전략)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 제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미래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전환, 미래차 및 연관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 수립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①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 주요 정책과제 ①

구 분	세부 이행계획
전기차충전기	•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생활충전 환경 조성 - 보급목표: (완속) '20.9월 50,642기→ '25년 50만기, (급속) '20.9월 8,989기→ '25년 1.5만기 -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 상향(現 0.5% → '22년 5%), 기존건물 설치의무(2%) 신규 부과
수소차충전소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 우선 구축 수도권(서울) 구축목표: '20.9월 13기(3기) → '21년 53기(13기) → '22년 80기(30기)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 상향(기초 → 광역·구축담당부처), 메가스테이션 등 신사업 모델 확산,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1~'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사업자 경제성 제고
차량 가격	차량가격 인하,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내연기관치와 동등한 가격경쟁력 확보 미래차 핵심부품 성능 제고, 부품·소재 국산화, 미래차 전용플랫폼 적용 전기차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 추진

구 분	세부 이행계획
보조금	•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큰 상용차 지원 집중 - 상용차: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버스·트럭 지원 집중 - 승용차: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 도입(가격인하 유도), 전비·저온 성능 강화 ※ (전기택시) 차종별 보조금 + 추가 인센티브(+200만원), (전기버스)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전기트럭) 생산Capa 수준 지원('21년 2.5만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비 2억원)
수요 창출	 민간부문: (대규모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통해 대규모 수요자(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 촉진 (민간 전환 촉진)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EV 100 프로젝트" 추진 공공부문: (공공 수요 확대)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 100% 전기·수소차로 구매('21~), 기관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단계적 상향) 수소차 보급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 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②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

-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미국·유럽을 포함한 주요국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잇따르면서 친환경차 관련 산업이 확대되는 추세
- 완성차·핵심부품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타켓지역별 전략적 수출을 통해 글로벌 전기·수소차 시장 선점 전략 추진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 주요 정책과제 ②

구 분	세부 이행계획
완성차	'25년까지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 - 수출목표: '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13.4만대(수소승용차 7만대, 수소트럭 6.4만대), 하이브리드차 30만대 수출 추진 - 수출전략: (전기차) 세계최고 성능 기반으로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구매력이 낮은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 · (수소차) 북유럽・미국・중국 등 수소충전소 구축지역 및 상용차 의지가 높은 지역 집중 공략
핵심부품	• 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新수출상품으로 육성 - (배터리) 이차전지 등 배터리 제조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등을 통해 '25년 전지산업 연간 매출 50조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 13조원 달성 추진 - (기타 핵심부품) 자동차 반도체·센서·전장·SW·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선점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 자립화 추진
육·해·공 수송수단	• 수소철도·수소선박·플라잉카(UAM·PAV) 등의 조속한 기술실증으로 미래 육·해·공 수송수단 전반의 수출동력화 - 수소선박, 수소철도, 수소건설기계 관련 기술개발·상용화 및 수출상품 육성 - '25년 플라잉카(UAM·PAV) 최초 상용화 추진('30년 10개 노선서비스, '35년 자율비행 실현 및 대중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③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 주요 정책과제 ③

구 분	세부 이행계획
인프라·제도	자율주행 기술활용・인프라・제도 정비 인프라: '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을 구축하고, '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군도로 정밀도로 지도 구축・갱신 및 무상 제공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車-도로', '車-車'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 법・제도: · (안전기준)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 방향 정립을 위해 레벨4 제작 가이드라인 선제적 마련 ('20.12) →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 마련('19.12) 및 시행('20.7~) · 자율주행차 사고시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체계,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 제작자・이용자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20~)
사회문제 해결	• 전염병 확산 방지, 노약자 이동권 확보, 교통소외지역 등 사회문제 해결에 첨단자율주행기술 적극 활용 - (언택트 서비스) 자율배송·무인편의점 시범운영('23~), 자율주행차(셔틀 등) 탑승자의 건강 진단 정보를 인근 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사업 추진('21~'24) -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셔틀 보급을 통해 노선운행 기피지역, 수도권 외 소외지역 등 교통소외지역의 이동 편의 제공
데이터댐 구축	 자율주행 데이터댐 구축으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서비스산업 토양 마련 (국가표준) 세계최초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 마련 및 국제표준 제안 추진 (데이터댐)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등이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축적·가공·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新서비스 개발에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④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 주요 정책과제 ④

11101772			
구 분	세부 이행계획		
사업 재편	 사업재편·상생을 통하여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 추가 발굴 '20년 13개사 → '21년 30개사 → '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 이상 부품기업 발굴 혁신기업, 신산업 전환기업 등에 종합적인 자금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지원, 사업전환기업에 패키지 지원(기업당시설·운전자금 100억원, R&D 자금 5억원 등 최대 105억원 규모) 		
자생적인 미래차 확산 기반 조성	 민간자본 활용, 미래차 뉴플레이어 육성, 규제 특례 및 新비즈니스모델 육성 (미래차 + BIG 3 펀드 조성)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함으로써 미래차 新비즈니스 육성 지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內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펀드" 조성('21), '20년 내에 1,500억원 규모의 "BIG 3 펀드" 결성하여 '21년부터 미래차 투자 개시 (미래차 뉴플레이어) 미래차 관련 중견기업 및 중소・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구 분	세부 이행계획		
	- (新비즈니스모델)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新사업모델 개발을 지원		
기타 미래차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	 미래차 정비시스템 완비, 현장·개발인력 양성, 미래차 全주기 친환경화 추진 (정비시스템) 일반 정비소(3.8만개소, '18년)의 2%에 불과한 전기·수소차 정비소(600여개)를 '25년까지 5%(2~3천개) 이상으로 확대 (인력 양성) '25년까지 10~20여개 대학에 미래차 융합과정 신설, 기존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의 미래차 중심 전환 지원 (全주기 친환경화) 전기·수소차 및 부품 소재 생산전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고, 배터리 잔여수명을 활용한 재사용 및 사용 후 배터리 분해·자원 확보를 위한 재활용 활성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0년 Vol. 4 통권 제15호

발 행 일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0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국회 내·외부 전문가들의 예산·결산·기금의 분석, 경제 및 조세·재정정책의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 간 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 의 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 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